

# 의정활동보고서

제193회 정례회(2004. 11. 20 ~ 12. 20)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오늘부터 제193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저항세력의 인질납치 피살사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와,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순수한 국내기술과 자본으로 세계 95번째의 산유국의 꿈을 이루워 낸 것은 단합된 우리 국민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정도 금년 한해동안 큰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을 설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사항은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발빠르게 강구하여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의 노고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가 올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민간 연구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것은 훌륭하게 도정을 이끌어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지방분권이니 지역혁신이란 말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지배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수도권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지방분권이 조금도 중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원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구시대의 행태와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생산적인 도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 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지적된 사항과 도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일회성 행사 등 경상경비는 가급적 자제하고, 도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도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각종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저울철 화재예방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20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 차 례

I. 개 황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상임위원회 .....

III.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상임위원회 .....

IV. 민원 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사항 .....

2. 조례공포 사항 .....

3. 의원신분 변동사항 .....

4 위원회 활동사항 .....

VI. 기타사항 .....

VII. 도정질문 .....

VII. 5분 자유발언 .....

부 록

□ 조 록 안 .....

- 01.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0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03.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04.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 .....
- 05.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 06.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 07.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예 산 안 .....

- 01.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02.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동 의 안 .....

- 01. 2005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
- 02. 2005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 03. 2005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 04. 2005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 05. 2005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 06. 2005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 07. 2005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 08. 2005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
- 09. 2007학년도개교학교신설비지방채발행안 .....
- 10. 2005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
- 11. 2005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2. 2005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 13. 2005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14. 2005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 15. 2005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 16. 2005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
- 17. 2005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 18. 2005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 19. 2005년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3회 정례회는 2003년 11월 20일 개최하여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회기동안 5차의 본회의와 연 24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1월 20일(토)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장하숙 의원)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193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5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5년도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5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조례안 등의 각종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12월 1일(수)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권종연 의원, 김석호 의원, 김순건 의원)을 하고, 12월 2일(목)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신영호 의원, 임원식 의원, 김희문 의원)을 하였다.

12월 16일(목)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준호 의원, 채희영 의원)을 청취한 후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등 20건을 처리하였으며,

12월 20일(월)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처리한 후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 Ⅱ. 의사일정

### 1. 소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수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집회 공고일 : 2004. 11. 5

라. 집회일시 : 2004. 11. 20(토) 11:00

###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4. 11. 20 ~ 12. 20(31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5회 (누계 65회)

○ 상임위원회 : 24회

구 분	계	의 회 운 영	기 획	행 사 정 회	교 육 환 경	농수산	산 업 관 광	건 설 소 방	특 별
금 회	24	2	2	5	2	2	3	2	6
누 계	287	30	29	44	46	30	34	30	44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 3. 활 동

####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1.20(토) 11:00 (제1차)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제193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8. 5분 자유발언 ○ 장하숙 의원(비례, 기획위원회)	원안가결 ”
2004.12. 1(수) 11:00 (제2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 권종연 의원(안동시, 기획위) - 김석호 의원(구미시, 행정사회위) - 김순건 의원(포항시, 교육환경)	
2004.12. 2(목) 11:00 (제3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 신영호 의원(의성군, 농수산위원회) - 임원식 의원(울진군, 산업관광위원회) - 김희문 의원(봉화군, 산업관광위원회)	
2004.12.16(목) 11:00 (제4차)	1. 5분 자유발언 ○ 김준호 의원(영천시, 교육환경위원회) ○ 채희영 의원(문경시,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12.16(목) 11:00 (제4차)	2. 2005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3. 2005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4. 2005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5. 2005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	"
	6. 2005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7. 2005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8. 2005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9. 2005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 계획안	"
	10. 2007학년도개교학교신설비지방채발행안	"
	11. 2005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	"
	12. 2005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운용계획안	"
	13.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	"
	14.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
	15. 2005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계획안	"
	16. 2005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7. 2005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 계획안	"
	18. 2005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19. 2005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20.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수정가결
	21.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 나.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1.29(월) 15:00 (제1차)	○ 제194회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견 ○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	원안가결 "
2004.12. 7(화) 10:00 (제2차)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005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수정가결

###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3(금) 11:00 (제1차)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관리실·공보관실 소관	수정가결
2004.12. 6(월) 11:00 (제2차)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	"

###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3(금) 11:00 (제1차)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사회복지, 재해구호,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원안가결
2004.12. 6(월) 11:00 (제2차)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자치행정국(자연환경연수원) 소관	수정가결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7(화) 10:00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경도대학·사회복지여성국 소관</li> <li>○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li> </ul>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4.12. 8(수) 14:00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li> </ul>	수정가결
2004.12.16(목) 14:00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li> <li>○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li> <li>○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li> </ul>	원안가결 " " "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3(금) 11:00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환경산림국·산림환경연구소·산림자원종합 개발사업소·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li> <l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li> </ul>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4.12. 6(월) 11:0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li> <li>○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li> </ul>	수정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3(금) 11:00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국 소관</li> </ul> </li> <l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li> </ul> </li> </ul>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4.12. 6(월) 11:0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원 소관</li> </ul> </li> <l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li> </ul> </li> </ul>	수정가결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3(금) 11:00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통상실 소관</li> </ul> </li> <l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li> <li>-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li> </ul> </li> <li>○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li> </ul>	수정가결  원안가결 " "
2004.12. 6(월) 11:0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통상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li> </ul> </li> <l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li> <li>-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li> <li>-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li> </ul> </li> <li>○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li> </ul>	수정가결  원안가결 " " 유보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16(목) 10:00 (제3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6(월) 11:00 (제1차)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도시국 소관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 -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2004.12. 7(화) 11:00 (제2차)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소방본부 소관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 8(수) 10:30~18:00 (제2차)	○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4.12. 9(목) 10:30~18:30 (제3차)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 경제통상실 · 농수산국 · 공보관실 · 감사관실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4.12.10(금) 10:30~18:00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li> <li>- 자치행정국 · 문화체육관광국 · 사회복지여성국 · 공무원교육원 소관</li> </ul>	
2004.12.13(월) 10:30~18:00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li> <li>- 농업기술원 · 보건환경산림국 · 건설도시국 · 소방본부 소관</li> </ul>	
2004.12.14(화) 10:30~18:00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li> <li>- 경도대학 · 보건환경연구원 · 의회사무처 소관</li> <li>○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li> </ul>	
2004.12.15(수) 11:00~15:00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경상북도청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채택</li> </ul>	수정가결

### Ⅲ. 의안처리

####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28 (254)	28 (253)	25 (223)	3 (29)	(1)	(1)		
조 례 안	소 계	7 (114)	7 (114)	6 (100)	1 (13)	(1)		
	의 회 제 안	1 (11)	1 (11)	(5)	1 (5)	(1)		
	도지사 제 출	6 (83)	6 (83)	6 (77)	(6)			
	교육감 제 출	(20)	(20)	(18)	(2)			
예산·결산	2 (23)	2 (23)	(10)	2 (13)				
동의·승인	19 (73)	19 (73)	19 (72)	(1)				
건 의 안	(10)	(10)	(9)	(1)				
결 의 안	(10)	(10)	(10)					
기 타 안	(24)	(23)	(22)	(1)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30 (255)	29 (254)	7 (114)	2 (23)	19 (73)	(10)	(10)	1 (24)	1 (1)	(1)	(3)
의회 운영	2 (8)	1 (7)	1 (5)				(2)		1 (1)		(1)
기획	(17)	(17)	(10)		(5)	(1)		(1)			(1)
행정 사회	10 (73)	10 (73)	3 (47)		7 (24)	(1)	(1)				(1)
교육 환경	3 (34)	3 (34)	(24)		3 (9)			(1)			
농수산	2 (16)	2 (16)	(5)		2 (9)	(2)					
산업 관광	6 (40)	6 (40)	1 (16)		5 (20)	(2)	(2)				(1)
건설 소방	4 (15)	4 (15)	2 (6)		2 (6)	(2)		(1)			
특별	2 (23)	2 (23)		2 (23)							
본회의	1 (29)	1 (29)	(1)			(2)	(5)	1 (21)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IV. 민원처리

###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 2. 진정

####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0 (98)	3 (8)	2 (11)	1 (10)	2 (20)	1 (8)	(8)	1 (12)	(9)	(12)
의 회 운 영										
기 획	1 (4)				1 (1)		(1)			(2)
행 정 사 회	1 (9)	1 (5)	(2)	(1)	(1)					
교 육 환 경	2 (21)			(1)		1 (8)		1 (11)		(1)
농수산	(8)			(1)	(1)				(6)	
산 업 관 광	3 (22)		2 (9)	1 (2)			(7)			(4)
건 설 소 방	3 (31)	2 (3)		(5)	1 (17)			(1)	(3)	(2)
특 별 위 원 회	(3)									(3)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0 (98)	10 (98)				
의회운영						
기 획	1 (4)	1 (4)				
행정사회	1 (9)	1 (9)				
교육환경	2 (21)	2 (21)				
농 수 산	(8)	(8)				
산업관광	3 (22)	3 (22)				
건설소방	3 (31)	3 (31)				
특별위원회	(3)	(3)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04.11. 5)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교육환경 (2004.11.10)
경상북도교육감 (2004.11. 5)	2007학년도개교학교신설비지방채발행안	교육환경 (2004.11.10)
우성호의원외27인 (2004.11. 8)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각 상임위 (2004.11.11)
경상북도지사 (2004.11.11)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 조례안	산업관광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건설소방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건설소방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4.11.12)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회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교육환경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 계획안	교육환경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	농 수 산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운용계획안	농 수 산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	산업관광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산업관광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계획안	산업관광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산업관광 (2004.11.12)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산업관광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1)	2005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 (2004.11.12)
경상북도지사 (2004.11.15)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	행정사회 (2004.11.15)
경상북도지사 (2004.11.15)	2005년도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회 (2004.11.15)
경상북도지사 (2004.11.19)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11.19)

##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10.2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4.11.15
2004.10.2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11.15

## 3. 의원신분 변동사항 (2004. 10. 30 도의원 보궐선거)

선 거 구	당선의원	비 고
울릉군 제1선거구	이 상 태	무투표 당선

#### 4.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2004.11.8(월) ~11.10(수)	전남·전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및 전남도 신청사 신축 공사장 방문
교육환경	2004.11.2(화)	경 주	행정사무감사관련 교육청 직협 요구 에 대한 간담회
산업관광	2004.11.3(수) ~11.7(일)	속초, 금강산	강원도 및 금강산 비교시찰
예결특위	2004.11.11(목) ~11.13(토)	영양, 울진, 경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VI. 기타 사항

성균관 유도회 경북본부 회장 취임식

- 일 시 : 2004. 10. 29(금) 11:00
- 장 소 : 대구향교 교육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대한적십자 창립 제99주년 기념 경북지사 연찬대회 및 봉사원대회

- 일 시 : 2004. 11. 1(월) 11:00
- 장 소 : 구미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 제41회 경북학생체육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4. 11. 2(화) 11:00
- 장 소 : 경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권준택 의원, 김선중 의원, 김순건 의원, 김준호 의원, 박종욱 의원, 이 달 의원, 장미향 의원

□ 제6회 경북학생축제 개회식

- 일 시 : 2004. 11. 3(수) 13: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권준택 의원, 김선중 의원, 김순건 의원, 김준호 의원, 박종욱 의원, 이 달 의원, 장미향 의원

□ 구미디지털 전자전시회 및 e-Biz엑스포

- 일 시 : 2004. 11. 5(금) 11:00
- 장 소 : 구미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화전략 정책포럼

- 일 시 : 2004. 11. 5(금) 14:00
- 장 소 : 대구 파크호텔
- 참 석 :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 제44회 경북도4-H 경진대회

- 일 시 : 2004. 11. 6(토) 10:00
- 장 소 :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용석 농수산위원장(축사), 손만덕 의원

□ 2004 경북리그 개막식

- 일 시 : 2004. 11. 6(토) 11: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

- 일 시 : 2004. 11. 9(화) 14:00
- 장 소 : 대구국채보상기념공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이용석 농수산위원장, 김주연 의원

□ 2004 지방의회의원 정보화 워크숍

- 기 간 : 2004. 11. 11(목) ~ 11. 12(금)
- 장 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참 석 : 권종연 의원, 김병진 의원

□ 『유비쿼터스-경북』 전략 심포지움

- 일 시 : 2004. 11. 12(금) 10:3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이원만 기획위원장

□ 제85회 전국체전 해단식

- 일 시 : 2004. 11. 12(금) 14:30
- 장 소 : 경북체육고
- 참 석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한혜련 간사, 김정기 의원

□ 민족통일 경상북도대회 및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 일 시 : 2004. 11. 15(월) 14:00
- 장 소 : 경주 서라벌대학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 일 시 : 2004. 11. 16(화) 17:30
- 장 소 : 서울 하얏트 호텔
- 참 석 : 채희영 산업관광위원장

□ 울릉군 보건의료원 준공식

- 일 시 : 2004. 11. 17(수) 14:00
- 장 소 : 울릉군 보건의료원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축사)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4. 11. 17(수) 14:00
- 장 소 : 경기도의회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4. 11. 18(목) 11: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2회 소방현장 활동 사진작품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 일 시 : 2004. 11. 18(목) 14:00
- 장 소 : 상주관광호텔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 VII. 도정질문

### □ 제2차 본회의

#### 권종연의원 (안동시, 기획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93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해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형편을 고려할 때 막중한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따라서 질문에 앞선 모두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기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보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경구가 나옵니다.  
이를 해석하면, “가혹한 정치는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무섭”는 의미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외없이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악정을 경계하고 경세제민  
(經世濟民)의 선정으로 치세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의원은 이번 연말 정례회의 도정질문이야말로 지난  
한해를 잘 매듭짓고 새로운 해를 산뜻하게 출발하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하나 하나가  
도정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정책제언이라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시종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경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과 21C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국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져온 분권과 분산체제를 철저히 외면한  
집권과 집중체제의 결과는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와 지방의 낙후와 침체를 유발하게  
하여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상실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  
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정권 창출이래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법적근거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분권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으로 판결남으로써 수도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맞물려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유치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에 유치대상 54개 기관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접수한 바가 있고, 2004년 2월에는 총 65개 기관으로 증가시켜 공공기관의 도내유치를 위해 방문활동, 홍보활동, 정책발표 활동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 계획이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45개 공공기관의 선정 및 이전협약 완료 시점이 금년 8월에서 자치단체간의 과도한 유치경쟁, 이전기관 및 기관노조의 반대 등 여러 사유로 내년 1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저조하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가 균형발전의 거시적 안목에서 인식과 사고를 전환하여 기존의 생색 내기 지원이나 보호 수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낙후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공공기관 유치전략도 막연한 로비, 유치신청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켜 선택과 집중 전략에 근거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께 물겠습니다.

본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선택과 집중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잠재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금, 한국전력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하여 유치희망 기관 1순위가 되는 등 각 시·도가 공공기관의 자기 지역 유치를 위해 과당·출혈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김천과 포항이 대한주택공사를, 구미와 상주가 한국도로공사를, 군위와 김천이 한국토지공사를, 안동과 봉화가 국립산림과학원을, 안동, 포항, 구미가 한국전력공사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도내 내부에서 조차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외부의 상대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 실로 자중지란(自中之亂)이요, 적전분열(敵前分裂)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 23개 시·군의 입장이 정리조차 되지 않고 소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내부경쟁의 치열성이 공공기관 도내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도내 23개 시·군별 특성과 입지조건에 맞는 유치전략 수립과 협의·조정이라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군별 중복 유치신청에 따른 업무 조정과 협의를 하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도처럼 예산을 투입하여 유치대상 기관의 발굴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유치단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한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해서 각 지역별 유치신청을 협의·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북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행정자치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을 선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은 그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 정도가 최하순위인 30%정도로 이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총 70개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면적이 전국토의 절반 가량인 48.8%로 9만9,600km<sup>2</sup>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인구는 고작 전국의 7.4%로 356만6,299명에 지나지 않는 지역들입니다. 이는 신활력지역 자체가 바로 낙후지역의 대표적 표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활력지역 선정지역의 시·도별 현황은 전남 17개, 경북 13개, 강원 12개, 전북과 경남이 각 9개, 충청 남·북이 총 8개, 인천 2개 지역 등으로 우리 경북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0개 낙후지역 내에서도 최낙후 지역 중 우리 경북은 영양, 청송, 봉화, 군위, 울릉 등 5개 지역이나 차지함으로써 전북 3개, 전남 2개, 강원 2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모두 경북 북부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북 북부지역의 획기적 발전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96년 정부는 개발이 현저히 저조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공언하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에도 4조1,0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97개 사업에 5,873억원인 14.3%밖에 예산이 투입 되지 않았으며, 총예산의 70%나 차지하는 민자유치 실적도 당초 계획이었던 3조4,387억원의 4.1%인 1,218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촉진지구사업 상당수가 사업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음이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토록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개발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국비의 지연 지원 및 기간도로망과 환경제약 등으로 인한 민자유치 여건 미비라고 합니다.

국가예산확보나 민자유치는 지사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민자유치를 4%밖에 하지 못한 것도 지사의 역량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간도로망의 미비를 이유로 삼았으니 이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남·북축 기간도로는 확충되었으나 동서축 간선도로의 미흡으로 지역 균형개발이 저조하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동·서 6축 고속도로, 영덕~안동~상주~서천간 300km가 충청도의 당진~대전간 94km, 서천~공주간 54km, 청원~상주간 81km 구간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을 때, 우리 경북도에서는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상주~안동간 50km와 안동~영덕간 81km 구간은 이제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그것도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결과에 의해 사업의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경제성 하나만으로 따진다면 국가 균형개발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3선의 도백을 자랑하시는 지사의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도정의 결과입니다.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사의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작금의 북부지역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청사에 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북부청사 기능의 협소함과 행정민원 처리과의 부재, 인력부족 등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북부청사 개설 취지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의미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느끼는 장으로써 청사 내 도지사의 간이집무실을 설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사와 북부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가감없이 전달받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는 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경제 제일도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도정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포항의 경우에는 풍부한 산업시설 기반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산·학·연·관 공동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R&D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구미의 경우에는 전자·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IT산업의 혁신 클러스트화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우리 경북도의 핵심전략사업인 바이오(Bio)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건립추진 중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안동이 한국 바이오(Bio)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오(Bio)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건설·가동되면 7천5백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조5,000억원의 생산효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용창출과 생산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원활한 삼성, LG 등

대자본의 기업유치가 절대 필요조건으로 이 기업들의 유치와 자본의 투입이 성패의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 때 대기업 자본들은 관심을 갖고 입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행정력과 각고의 민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임 중에 꼭 완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바이오(Bi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기업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에서는 어떤 시책을 강구중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정부안은 시·군·구의 경우 6천 여명 규모의 자치경찰제를 창설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는 실종되어 반쪽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안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자치경찰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세출은 많고 세입은 적어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농촌지역 지자체로서는 도시지역 지자체에 비해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농촌지역 시·군의 자치경찰 재정확충 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자치경찰 재정은 상대적으로 치안부재와 질 낮은 치안서비스를 초래하여 총체적 경찰행정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으로 이러한 치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도입·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자치경찰활동, 경찰력 배치, 예결산심의, 범죄정책 및 자치경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군·구 자치경찰 위원회 제도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구공항 국제직항노선 증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4 경북도 주요업무 평가를 보면, 지역혁신전략산업육성, 공공기관유치노력, 국내외 기업 및 외자유치 등으로 동북아 으뜸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는 긍정적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도레이사와의 4억불 MOA 체결, 일본 아사히 글라스사와의 1억5천불 체결 등 외자유치 실적은 경제 제1도정을 지향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자치단체 상설 사무국을 우리 도에 유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핵심기관을 유치하는 쾌거도 이루어 향후 동북아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의 관문 구실을 하고 있는 대구공항은 국제직항노선이 6개 노선, 주 22편 왕복만이 전부이며, 이 또한 상해, 심양, 연대, 청도, 북경, 방콕노선 뿐입니다.

동북아 경제권의 경쟁자요 동반자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96년, 대구-오사카 직항노선이 개설되었으나 평균 22 - 23%대의 저조한 탑승률로 인해 2002년도에 폐지되었고, 금년 6월에 이르러 비로소 나리타공항과의 직항노선이 개설준비 중 이 또한 나리타공항 측의 항공노선 포화상태로 개설불가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향후, 지역 수출입 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북이 동북아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직항노선은 물론,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잠재적 가능성이 풍부한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의 직항노선 증설은 우리 도가 추진해야할 필연적 과제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제 직항노선 증설을 위한 우리 도의 추진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금년도 교육 분야에 대한 몇 몇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분야는 정치·행정·경제·사회분야 등 타 어느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라크에서 무장테러집단에 의해 피살된 한국청년 김선일 씨의 죽음에 애도하는 전국민적 추모열기가 고조되던 지난 6월 24일, 울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 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에 곁들여 고급양주를 마시는 등 호화술판을 벌여 국민적 빈축을 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년도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은 앞서 언급한 교육계 지도층의 언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신우일신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물 개방시간 연장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시설물, 체육시설, 강당 등 개방은 학교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시행규칙 제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 우리 도의 학교 시설물 개방현황을 보면, 학교운동장이 초등학교 95.8%, 중학교 98%, 고등학교 95%를 개방하고 있고, 체육관, 강당포함은 초등학교 75.3%, 중학교 75%, 고등학교 81.6%를 개방하고 있어 전체 운동장은 96.5%, 체육관은 77.3% 개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학교시설물의 양적 측면인 개방현황이 아니라 질적 측면인 개방시간의 연장입니다.

물론 관리인원 부족, 일부 지역주민의 공공의식 미흡,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지역주민에게 건강과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학교시설물 개방시간 연장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첫째, 방과 후 야간 관리인원을 지역주민으로 충원하여 야간관리전담반을 조직하고 그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책정한다면 개방시간 연장과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보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학교시설물 이용에 따른 제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 학교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소 직영체제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도의 중·고교 학교급식은 직영과 외부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 공·사립 전체가 직영체제로 운영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급식소 전체가 직영체제로 전환되면 학교급식소의 운영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급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급식형태에서 공립은 직영 786개교(97.2%), 위탁 23개교(2.8%)인데 반해 사립은 직영 104개교(60%), 위탁 70개교(40%)로 공립은 직영체제가 압도적이며 사립은 직영이 위탁보다 다소 높으나 공립에 비해 위탁이 현저히 높습니다.

둘째, 급식전담인력은 공립이 정규직 398개교(82.9%), 일용직 82개교(17.1%)이며, 사립 정규직 6개교(9.8%), 일용직 55개교(90.2%)로 사립에서 정규직은 불과 9.8%로 일용직이 절대적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앞서의 공립과 사립의 학교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사립학교 학교급식소의 운영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책임감, 사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전담인력 중, 일용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교육감은 본의원의 제의를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급식소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우리 도의 학교 급식비는 1끼당 약 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끼당 급식비에서 인건비의 비율은 몇 %나 차지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향후 학교 급식소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로는 식자재 구매에만 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학교급식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보충질문>

○權鍾淵議員 본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연말을 마무리 하면서 2005년 정말 도정에 혁신적인 도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모두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어떤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북부권균형발전을 위한 유교문화권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도내 기관 균형배치, 물론 도정이나 시책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답변하지 않으신 관계 실·국장이 하신 답변 내용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제가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그래도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래도 제가 지사님을 정중하게 이렇게 보충질문을 모셨습니다.

(○도지사 이의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문일답입니까?)

예. 의회에서 지사님도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북의 북부권이 왜 균형발전이 안 되었나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고위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현실에 부응하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 이유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여기 간부공무원들, 도청의 주류공무원들은 대구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살면서 경상북도 도정을 펼쳐야 되는데 영양, 청송, 봉화가 어떻게 어려운지? 영양, 청송 아줌마들이 사과를 어떻게 따는지 보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북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외부적인 문제는 인식을, 위기인식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은 민선시대인 아닙니까? 도정유치 하신다 그래서 안 되어서 대구·경북 통합론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경북도의 예산이 2조9,000억, 대구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3조가 넘는 것 같아요.

결국 지사께서 경북을 살리려고 정말 경북을 한번 구해내려고 10년 동안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셨는지? 도정을 펼쳤는지? 그 답이 신활력 지역, 전국 낙후지역 70개 시·군에 경북이 13개, 영양, 봉화, 청송, 군위, 울릉 다섯 개 지역이 북부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역할이 무엇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을 못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 이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權鍾淵議員 최선을 다 한 줄 압니다.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權鍾淵議員 도민들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지사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도민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鍾淵議員 본의원의 생각과 여기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은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지사님, 이제 정말 지사님은 행정력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분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도백으로서 정말 사심 없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부분 북부지역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 경제적 현실, 정말 지사님께서 이제 선택하실 때입니다. 이제 지사님이 하실 일은 남은 임기 중에 북부지역의 발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지사님께서 관선, 민선 3기를 하면서 경북도백으로서 역사 속으로 도민이 존경하고 우러러 하는 그런 지사로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은 우리 경북도민이 사용하는 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포항공항이 있지만 동해권의 일부 역할이고 국제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께서 동북아 연구포럼상설사무국 설치하셨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환동권에 동해안권에 이런 국제적인 그런 것을 유치할 적에 공항문제라도 미리 왜 대구공항에 일본을 비롯한 그런 직항노선을 안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올해부터 건교부하고 협의가 들어갔고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경북이 부도율은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실업률은 낮지만 부도율이 높아요. 전국 평균이 0.5%인데 우리 부도율이 1.3%입니다. 우리 경북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력을 제고하고 강화를 시키려면 바이어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오는 게 맞습니까? 여기 대구공항에 오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우리 경북지역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대기업가가 지사님 찾아뵈려고 인천에 들려 가지고 대구 오는데 여섯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왜 이 대구공항문제 대구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 가지고 이 직항노선을 안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鍾淵議員 예?

○權鍾淵議員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 하셨다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안 맞는 다는 것이죠.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경북발전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에 국립대가 제가 알기로 네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 안동대,

상주대, 금오공대, 지사님 경북에 있는 국립대학교 졸업식에 한번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權鍾淵議員 민선 10년 동안에 경북에 있는 국립대에 지사님께서 졸업식을 참석 안 하시고 그러면 경북대하고 영남대는 한번 참석하셨습니까?

○權鍾淵議員 지사님께서 경북을 사랑하고 경북을 구하려는 마음이 정말 민선 지사 처음 시작 할 때 마음처럼 계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행정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래 계시다보면 아무래도 사물을 보는 게 좀 흐려지게 볼 수 있고 지사님, 경북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영양, 청송에서 간부회의를 한 번 주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權鍾淵議員 지사님 고맙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신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저도 그렇게 알고 남은 임기동안 지사님의 더욱 분발과 더 애정 어린 경북사랑을 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직시에 우리 간부회의를 지사님께 경북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에서 열자고 제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權鍾淵議員 경상북도가 도정을 혁신하는데 다른 시·도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없습니다. 여기계 보면 투자심사분석과 문화예술 관리관 이 민선 들어와서, 지방자치가 들어와서 집중과 선택 할 때입니다. 기존의 공무원 역량 가지고는 변화하는 도민들의 의식이나 바램을 맞추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능력 있고 정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경북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까?

○權鍾淵議員 국장님, 지사님을 잘 모시세요.

○權鍾淵議員 실·국장은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잘 펼치도록 보좌하는 역할 이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직원을 데리고, 인사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도정개혁이 오고 도정발전이 혁신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그 답은 이 한 장에 다 나와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대구공항 직항 증설문제 지금 현재 여섯 개 상해, 청도, 태국 등 전부다 관광 상품화 하는 노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權鍾淵議員 일부 있겠지요. 우리가 경제 제일 도정을 하기 위해서 대구공항에 일본 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선진아시아 국가하고 빨리 직항노선 하는 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權鍾淵議員 대구시장하고 얘기해서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대구·경북 통합론이 나오는데, 경북·대구 통합론도 아니고 대구·경북 통합론이 나오는데 얘기해서 마땅히 추진 되는 게 있습니까?

○權鍾淵議員 지금 현재 일본하고도 직항이 언제 된다는 분명한 제시는 없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협의 중이고 아직까지 협의중이고 완료된 것이 있습니까?

○權鍾淵議員 본의원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석호 의원 (구미시, 행정사회위원회)

○金碩鎬議員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와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미시 출신 김석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판결로 불거진 정치권의 반목을 비롯한 국가 보안법 폐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의 총파업,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보·혁간의 대립, 쌀 개방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이해를 위해 상호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출발선에 서야만 한다고 보는데 현 우리사회의 갈등을 보면 마주보며 달리는 열차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정신 착시현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는 저만 느끼는 심정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모두 느끼는 심정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에서는 혁신과 분권만이 국가발전의 길임을 강조하면서 "혁신과 분권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권을 확대시키고 지방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관련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공무원 노동조합설립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15일경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우리 도에서는 파업에 직접 참가한 안동시공무원을 비롯해서 9명 정도가 파면 및 해임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전공노 대경본부 및 안동시지부와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설득 작업 등을 시도해 봤는지 문제점이 파악되었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책임 추궁만 하는 것은 행정의 무력함이 아닌지 이러한 행정력으로 도민을 대신한 교섭 능력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직업으로서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되어있는데 공무원이 노동자로 규정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노동자로 규정될 수 있다면 헌법 제33조2항에서는 '노동3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법안이 국회 심의 중이며 정식 발효가 되지 않았으나 자치단체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 위법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체교섭을 위한 집행부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될 곳도 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노동조합 설립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이 경북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 조사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부 도민들은 소방직 및 경찰이나 군인 등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는 공직자의 노동조합 설립보다 국법을 집행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대의기관에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국민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직업인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 국민으로부터 신분보장과 정년보장이라는 특별혜택을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신분 및 정년보장의 혜택을 회수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져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이와 함께 도내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무 년 수와 평균 수령 급여총액, 그리고 도내 공무원 1인 평균 근무 년 수와 평균 수령 봉급총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은 전 국민의 노동조합화를 유도 할 수도 있으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정책과 관리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 노조 법안이 공포되어도 일부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 6급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무원 노조와 도민의 권익을 위한 교섭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 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통망 구축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경북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가 줄고 있으며 경북 전체인구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 세수부족과 교육, 문화, 경제 등 각종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옹도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가운데 하나가 도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새로운 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성장산업인 관광 레저 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 레저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문화 및 관광 레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접근성의 낙후로 주5일제를 맞는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을 흡수 유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기존의 철도나 버스는 전국민의 자가용시대를 맞아서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의 한계에 부딪쳐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항공 노선망 구축을 통한 소형항공기 운항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소형항공기 노선망 구축을 통한 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정질의, 5분자유발언, 새로운 대체 교통망구축을 위한 지역 항공노선망 정책제안 및 경북도의회 의원 만장

일치로 소형항공기 노선망 구축 요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넘겼으나 아직 지사의 확고한 소신을 듣지 못 했습니다.

예천공항의 폐쇄와 울진공항의 개항연기, 포항공항의 항공기 운항 40% 축소 등 우리도의 성장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회의 결의로 요구된 소형항공기 노선망 구축 요구 건의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승회 교육감께 교육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는 자원빈국입니다. 그러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보릿고개를 없애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발전 하였습니다.

자원빈국으로서 지금의 경제 성장은 기능인력의 육성을 통한 임가공산업 및 생산 기술의 발전을 통한 산업화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실은 이공계와 기술계 기피현상으로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문계 중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의 제도는 청년실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더라도 40%에 가까운 실업계 고교가 정원 미달로 학생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같은 실업계고교의 미달사태와 우수 학생의 실업계 진학 대책마련을 위한 미래 기능 인력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교육에서의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공교육을 요식행위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과목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상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가운데 현재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7.5%에 불과하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무려 71.5%였습니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에 대해 64.4%가 공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무너지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 줄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폐교 처리된 농어촌 학교수는 몇 개교나 되며 관리 및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폐교의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계화에 편승하여 공교육기관인 많은 학교에서 외국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왔으나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이 바뀌고 나면 자매결연사업이 흐지부지 중단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익의 손실이 우려되는데 교육감의 관리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교실이 만들어지고, 좋은 교재가 교실에 채워지고, 좋은 학습을 위하여 각종 정책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와의 학생 수급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예산 집행 시 신설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적게 받고 있는 노후화 되고 오래된 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제몫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심정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위기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심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법질서는 혼란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불.탈법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국가의 위기를 부추기는 사회악까지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46개국 중 47위이고 아시아에서는 4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무너진 도덕성과 윤리성을 되찾고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 심각한 사회 이기성을 극복하여 도민이 화합하고 단결 하도록 이끌어 나가야할 마지막 보루는 고도의 청렴성과 법을 준수해야 할 우리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일반 국민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교육계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조직에서도 제몫 챙기기에 앞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봉사가 무엇인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서 법을 집행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요즘같이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시기도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이끌어 가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 파업과 관련된 업무복귀 시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국 공무원의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복귀시간이 시군마다 달라서 중징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는 복귀시간을 오전 9시로 정하였고, 태백시의 경우에는 정오까지로, 그리고 울산시는 퇴근시간인 오후 5시로 정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이 복귀시간 의 기준이 다른 이유와 우리 경상북도 인사

위원회의 경우는 복귀시간을 몇 시로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金碩鎬議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알고 계십니까?

○金碩鎬議員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진군가입니다.

“망설일 것 없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쫓겨나도 단김에 빠라 했다. 정권의 하수인은 이제 그만. 물러설 수는 없다. 되돌아 갈 필요도 없다.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관료사회의 부속품은 이제 그만.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다. 이제야 굴종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당당해졌다. 90만 동지들의 희망으로 부정부패 없는 통일된 조국.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노조여 진군하라!”

이것이 공무원노조의 진군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하게 이 사회를 지금 이만큼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공무원노조 진군가는, 물론 이게 규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회의 훌륭하신 공무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진군가를 듣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느낌을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金碩鎬議員 그리고 국장님, 공무원노동조합설립규정이 노동3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는 현행 공무원, 입법화가 되어 있는 법령과도 상충되는데 이러한 상충되는 법은, 즉 말해서 집행부 간의 교섭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출발하게 될 때 오히려 공직사회가 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대책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金碩鎬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과감히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낙영 경제통상실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제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경북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북 도민 모두가 원하는 대체 교통망 구축을 망설이는 집행부의 이유를 본의원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삼성항공에서 정기노선과 부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金碩鎬議員 지금 삼성항공에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 수원, 구미를 매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운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존 우리 교통망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보다 훨씬 경제력이 뒤떨어진 몽골에는 몽골리안 에어라인이라는 몽골 항공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포크50이라는 44인승 쌍발기와 54인승 쌍발기가 이 항공사의 주력기입니다. 그래서 몽골주변 인근지역을 이르쿠츠크를 비롯해서 인근지역을

전부 이 항공기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홋카이도 인근지역 모든 관광지를 그 50인승 쌍발기로 관광지를 연결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金碩鎬議員 그리고 소형항공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비싸게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항공은 저렴한 비용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金碩鎬議員 충북하고 제주에서도 지역항공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金碩鎬議員 충북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비행기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날개가 적어집니다. 날개가 적어지는 것은, 즉 말하자면 제트엔진을 달고 있는 기존 국제선 여객기는 엔진이 하나가 꺼지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거의 전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의 속도가 줄면 줄수록 날개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쌍발기라든지 이런 비행기는 이미 항공업계에서는 가장 안전한 비행기로, 공중에서 엔진이 꺼져도 활공까지 가능하고 하나의 날개가 하나의 엔진이 완전히 죽어도 하나의 날개로 비행이 가능하고 또 엔진이 두 개 다 꺼져도 활공으로 승객을, 일부 다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활공해서 비행기 착륙까지 가능한 것이 쌍발 비행기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가장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金碩鎬議員 그래서 비용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있는 구미 지역에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오롱이라는 회사의 여성 근로자와 남자 근로자를 모두 합쳐서 평균 임금이 연봉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오롱의 간부들이 바로 그 회사 내에 아웃소싱을 받아서 회사를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얼마나 하면 연봉 1,5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선 항공기, 아시아나·대한항공기는 기내 서비스가 국제경쟁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항공비용이 비싸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항공기는 조종사 2명해서 이 조종사들이, 기내에 여승무원 필요 없습니다, 커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조종사가 문만 열고 승객 태워서 문 닫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옛날에 시외버스에 보면 여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승무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선과 다르게 국내 지역항공은 이런 간접 서비스 비용을 없애고 줄여서,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기존 항공기의 약 50% 정도의 비용으로 운항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가용이 1,000만대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 자가용들이 각 시골 골목길까지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들이 전부 1인 오너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시외버스는 많은 버스들이 빈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 활동을 하는, 물류를 이동시키는 화물차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경북은 약 17배 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또 유류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교통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가 환경은 우리나라 기업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소비 절약만이 우리 경북을, 또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천~제주 노선이 중단된 아시아나항공기는 149인승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수요가 30~4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수요가 3, 40명밖에 없는데 149인승을 띄워서 그것은 적자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경북의 도민들이 실제 이동, 이웃 동네 이웃 도시간의 짧은 거리를 왕래하는데 그런 고도의 서비스, 승무원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시간씩 타는 장거리노선은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지역항공은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본의원은 촉구를 드립니다. 실장님, 본의원의 주장이 틀린 것은 없죠?

○金碩鎬議員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100% 만장일치로 이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수용하셔서 저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위원회라도 설치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한다면 또 준비를 한다면 언젠가는 소형항공 노선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경북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문일답에 잘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순견의원(포항시, 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제19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193회 정례회 도정질문은 한해 도정을 정리하고 차기연도를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도정전반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기업 경영 및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와 공기업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경북개발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설립된 이래 경북개발공사는 도내 각종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 등 외연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3개의 도립의료원 역시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사업, 전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경북개발공사가 2001년도에 8억6,300만원, 11억4,100만원, 2002년도에 60억6,900만원, 25억800만원, 2003년도에는 65억1,100만원, 29억1,400만원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외수익을 각각 창출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대비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의료원은 2001년도 3억1,700만원, 17억9,300만원, 2002년도에는 2억4,800만원, 20억7,600만원, 2003년도에는 7,100만원, 21억7,400만원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외수익을 창출하였고,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은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전무하여 오히려 당기손실만 누적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의 적자경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나마 흑자경영을 하여 이익을 내고 있던 포항의료원조차 당기순이익이 2003년도에는

7,100만원으로 급감하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각 의료원의 향후 흑자경영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퇴직공직자를 정부 산하기관에 전관예우식, 낙하산식 인사를 개혁차원에서는 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결국 나눠먹기식 코드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아직까지 시대적 순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도 산하 지방공기업 인사에 있어서 도 고위 퇴직공직자 출신이 대표로 임명되는 등 구태의연한 전형적 낙하산 인사가 시정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고위 퇴직공무원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공기업 경영악화 초래 및 조직원들 간의 위화감, 그리고 근무의욕 저하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도 산하 공기업의 대표선임에는 그 법적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며, 대표선임 방법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추천된 후보자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하여 11개 시·도에서는 후보자를 공모 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 도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시를 비롯하여 4곳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대 이익창출을 위해서 대표선임을 기존의 밑실인사, 전관예우식 낙하산 인사 등 파행인사를 전격적으로 시정하고, 경영의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기준으로 대표를 선임하는 획기적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도 산하 지방공기업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 대안책으로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지방공기업 대표 선임시 의회에 가칭 지방공기업대표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 도내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던 울진에서 친환경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내년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 25일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캐나다 등 해외 20여개 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가운데 대회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하나 뿐인 지구촌을 비료와 농약의 폐해로부터 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2년 독일에서 제1회 엑스포대회가 개최된 이래 2회 미국, 3회 일본을 거쳐 제4회째를 맞는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웰빙 선풍에 편승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 선호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개방시대에 한국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 비용은 국비 20억, 도비 30억, 특별교부세 30억, 군비 90억 등 총 170억원의 규모로 2004년도 현재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군비, 토탈 포함해서 77억이 기이 투자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소요예산 73억 중에 국비 10억, 도비 20억원이 겨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도가 주최하거나 지원한 국제규모의 대규모 행사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구U대회와 행정·재정적 지원에 비교하면 매우 미흡합니다. 실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업비는 제1회 행사 시에 도비 지원비율이 총사업비의 25%이고, 제2회 행사는 도비 지원비율이 총사업비의 33%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최된 제3회 행사는 도비 지원비율이 총사업비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U대회는 타 자치단체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14억 1,800만원으로 도비 지원비율이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05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경우 농도임을 자처하는 우리 도의 도비지원은 30억원으로 도비 지원비율이 약 17.6%로 타 국제규모의 행사에 비해 도차원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폭적인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요청한 관련부서 사업예산 신청요청액은 총 19억6,000만원임에 비해 금년에 확보된 도예산은 불과 6억1,400만원에 불과하므로 대회개최 시기가 임박함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강구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업과 도청간의 상호 인사교류 및 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2년12월31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3항, 임용령 제5장의2규정 신설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2003년 (주)삼성전자의 부장급 직원이 우리 도의 투자유치단장으로 영입된 바 있었으나 아직 인사교류 및 복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기업과 관료사회는 그 특징이 확연한 구별되어 있습니다. 안정성과 효율성과 위계성이 공직사회의 장점이라면 진취성, 역동성, 혁신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성은 민간기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이와 같이 민간기업과 공직사회의 장단점을 살려서 상호 인사 교류 및 복무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직원의 잠재적 능력 향상은 물론 민간기업과 도청간의 이해증진, 협력증대를 도모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기업 현황은 포항에 소재한 (주)포스코, 구미 (주)삼성전자 등 무려 3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우수 대기업이 다수 산재하고 있고 민·관 상호 인사교류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된 만큼 인사권자가 의지만 가진다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도의회의 도내로의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본회의장에 게시는 동료의원님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하고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약사항이었던 수도권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21세기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야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도청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81년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시·도가 분리 된 이후 경북도청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작금의 대구시와의 시·도 통합문제와 맞물려 현재까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 의한 시·도 통합론에 대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시·도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와 분석한 전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은 지사의 화두가 너무 추상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시·도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청이전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청이전과 함께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 등 도 단위의 기관이 이전될 시 이전지의 도시기반시설, 인구추이, 경제적 파급효과 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지를 예상하시는데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된 '81년7월 1일 대구시 북구 면적의 약 50%인 47km<sup>2</sup>를 차지하는 경북 칠곡군 칠곡읍을 대구시로 편입하였고 이어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난 '95년3월1일자로 대구시 전체면적의 약 50%인 427 km<sup>2</sup>인 경북 달성군마저 대구시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들 두 지역의 면적은 단순비교를 해 봐도 현재 대구시의 전체면적 885km<sup>2</sup>의 약 53.6%에 해당하는 커다란 면적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달성군은 예외로 하더라도 과거 대구시로 편입된 칠곡군칠곡읍과 현재 경상북도청이 소재하는 대구 북구 일부를 경상북도로 역편입 하여 현재의 칠곡군과 통합 칠곡시를 승격한다면 경상북도와 대구시간의 유기적 교류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와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논란으로 남아있는 우리 도의 도청이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안하는데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대구시장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기시에 경상북도교육청 일부 직원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위한 무리한 집단시위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교육정책의 최종결정기관인 도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책임회피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첫째, 경북도교육청의 도내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본의원은 집행부 소관사항 마지막 질문에서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교육청 등의 도내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와는 별도로 경상북도교육청의 도내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독자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개인적인 소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과 과학고등학교 학생 증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명칭이 함축하고 있듯이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가 21C 지식 정보화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과학 및 언어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법 제90조에 의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특수목적고 현황을 보면, 지난 '92년, '95년도에 경북과학고등학교, 경북외국어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북외고의 학교현황을 보면, 영어과, 일어과, 중국어과 등 3개 설치학과에 1, 2, 3학년 5개 학급, 총 15개 학급에 4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원 수는 내국인 42명, 외국인 강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블럭을 크게 아시아권, 미주권, 유럽연합권으로 봤을 때, 경북외국어고등학교가 아시아권과 미주권 위주의 3개학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유럽연합 경제권을 겨냥한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러시아어과 등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이와 같은 과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교원 대비 외국인 교원비율은 불과 8.7%로 경북외고가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지경인데, 외국인 교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 수는 서울에 6개, 인천 1개, 경기도 4개, 부산 3개, 충북 2개, 그 외 경북을 비롯한 대구, 대전, 전남, 경남, 제주에 각각 1개교로 대부분이 외국어고등학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수요의 평등실현의 시대적 당위성과 미래시대의 예측을 위해 경북 지역에 새로운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보고, 현재 포항시 남구에 신축 중인 가칭 「이동고등학교」를 「포항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북과학고등학교는 1, 2, 3학년 6개 학급에 114명의 학생과 23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1인당 학생 5명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 교육대학교와의 교육연계 프로그램, 속진 제도에 의한 맞춤형 학습, 완벽한 장학제도 등 교육여건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과학고등학교는 부지가 협소하고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으며 특히,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지원 수에 비해 그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정원을 대폭 증원할 의향은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3차 본회의

### 신영호의원 (의성군, 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북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의근 지사와 미래 우리 사회를 책임질 후진양성에 애쓰시는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193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개인적인 기쁨에 앞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작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비롯한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당리당략적 대립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판결로 인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표류, 소비자 기대지수 88이 말해주듯 유가폭등, 환율폭락, 내수부진과 교역악화에 따른 사상 최대의 경제불황과 생계형범죄 증가, 청년실업, 가정해체 등 심각한 사회혼란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여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도정질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분야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등용과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야말로 인사의 시작이자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에 따른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야말로 개인의 자기개발은 물론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공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에서 적임자를 발굴·임용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대통령령이 이미 공포·시행되었음에도 우리 도는 아직 제도 시행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 제도의 구체적 확대시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우리 도의 개방형 직위 대상은 공보관, 법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관련 사업소장, 국제교류통상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조직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직무분석을 시도한다면 선정대상의 폭은 이보다 훨씬 넓어 지리라 보는데 답변자는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는 기존의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하여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모두가 참여하는 인사제도로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실현시키고 인사운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제도의 시행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도는 제도시행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평가표준모델이 개발되지 않아 인기투표의 경향, 조직 구성원간의 담합 가능성, 피평가자의 정보 부족에 의한 판단오류와 피평가자의 불이익, 조직 내의 개인적 불만 야기 등 개선의 여지도 많은 불완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면평가표준모델을 용역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도 차원에서는 평가대상, 평가위원 구성비율, 평가절차 등 평가제도 전반에 걸쳐 표준모델을 연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최근 4년간 다면평가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2년도 2회, 2003년도 2회, 2004년도 4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진실적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고, 평가 결과에 평가자 및 피평가자들을 통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다면평가제도, 근무성적평가제도, 직위공모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중앙 및 시·군간 인사교류 촉진 등 새로운 인사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인사운영테스크포스팀의 그간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탄력근무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탄력근무제도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고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핵심근무시간을 설정하고, 기존의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오전 9시와 오후 6시를 전후 해 1, 2시간을 각자의 생체리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 근무제도입니다.

본의원은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된다면 개인의 자아개발은 물론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 여성공무원들의 아침시간대 가정 및 육아문제, 에너지 절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 법제처의 행정심판관리국, 재정경제부, 중앙인사위원회, 농림부, 여성부, 국무조정실 등 7개 중앙부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주 40시간근무제와 추후 중앙부처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가 이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는 선례를 남길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어느 부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회기와 비회기로 구분되어 있는 업무특성상 의회사무처가 가장 적합한 기관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내 TV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1C 문화·복지시대에 아직 우리 도내 23개 시·군 2,495리의 14만1,684세대가 TV 난시청지역으로 남아 문화·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18일부터 4월2일까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상주 등 도내 유선방송 5개 업체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산간·오지 주민들의 TV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전선주 사용료 감면 및 유선방송사 케이블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 TV 수신료 부담 해소, EBS 교육방송 시청 확대를 위한 유선방송 설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상주시 화북면과 봉화군 석포면, 영덕군 지역 등에서 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유선방송 가설비를 일부 지원하였고, KBS 대구방송총국에 대해서는 난시청지역의 TV 수신료 면제를 건의하여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이 중계소 및 공시청 시설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경북채신청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시설의 확대 설치를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전체 TV 난시청지역을 감안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도 TV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자는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농촌지역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오후 동료 김희문의원의 질문요지와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시고 오후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한방 산업단지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역의 한약과 관련한 기반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웰빙문화를 감안할 때 한방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한방계획이 시험적으로 추진되다가 지난해 2003년5월9일 기획예산처가 한방바이오산업 기본설계 용역비 42억원을 승인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한방산업 공동산업안을 확정하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2003년12월에 삼성경제연구소와 대구한의대의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총 4,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 계획을 확정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소홀히 한 등으로 인해 2004년도에 사업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2004년7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간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방산업의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한방제조업의 가능성에 비해 과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한방산업의 예산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 KDI의 최종보고서에서 역시 부정적인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대구와 경북의 전략산업이면서도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예산안에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4년 10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산업진흥원 설립예산 21억원을 새로운 비목으로 만들어 확보한 바, 이를 바탕으로 첫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 진흥원은 2009년까지 843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경북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방산업이 국비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30일날 매일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대구·경북한방산업단지의 종합평가 결과 0.5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0.207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절차 등과 같은 공식적인 루트는 놔두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오히려 계획에 차질만 빚는가 하면 처음부터도 특정대학이 대구·경북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제안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상의도 없이 한약재를 검사할 국립한약재 품질관리원을 대구에 유치키로 했다고 발표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확정되고서 부터도 한방산업단지 입지와 기능배분을 놓고 대구시와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시간을 놓쳐 2004년부터 추진하려다 2005년도로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업계획이 얼마나 허술하고 과장되었길래 KDI는 조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적정규모로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KDI의 판단이 지역의 여망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었으나 한약자원개발센터, 한방산업진흥원, 한방산업연구원, 한방제품시험센터 등은 사업기능이 상당히 중복되고 방만한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해당 중앙부처의 승인과 국비지원이 없으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도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이 진정한 지역의 전략산업이라면 효과적인 대응논리를 내세워 중앙을 설득해야 하고 효율성이 낮다면 지역의 전략사업을 수정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향후 한방산업단지 계획은 예산과 규모는 처음보다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2005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경북지역 시·군 개별 단위사업으로 농림부 등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한방산업 육성계획 규모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여 다소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앞서서 있었던 의욕만 앞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전철을 되밟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한방산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선충이 1988년 일본에서 옮겨와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우리 도는 2001년 구미시에서 발생 되었으며 2003년 칠곡군으로 확산 되었고 금년 10월에는 포항시 지역에서 추가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금년 4월말 현재 6개 시·도 30개 시·군에 3,369ha에 이르며 이중 우리도가 3개 시·군에 649ha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긋하여 소나무 재선충 피해로 소나무가 자취를 감출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리다간 우리 애국가 가사를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현재의 사태를 산림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고 판단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했으나, 인력은 물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완전히 방제를 포기하고 금강송을 비롯한 용재 자원 손실은 물론 소나무와 함께 해온 우리 민족의 정서에 비추어볼 때 소나무 없는 산림은 생각 할 수도 없고 특히 전국에서 송이 생산량이 제일 많은 우리도의 경우는 경제적 손실이 타도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도의 송이 생산량은 전국의 9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한번 걸리면 100% 죽는다는 무서운 산림 재난이며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동물에 있어 구제역과 똑 같아서 감염이 확인되면 방제는 늦고 인근 살아있는 소나무까지 베어 불태워야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온 나라가 발각 뒤집혔고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훨씬 심각하고 영원히 복원 할 수 없고 일본이나 대만같이 소나무가 전멸한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상할 정도로 느긋합니다.

이번 방제에 실패할 경우 천년고도 경주지역에서 소나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도내 시·군의 재선충 방제시스템은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재선충 방역요원이 1~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신입공무원들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보면 2004년도에 우리 도는 겨우 4억7,100만원이었고 2005년에 9억8,700만원이 고작입니다. 경남의 경우는 피해 면적은 많습디다만, 2003년에만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선충방제는 진행적력을 집중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따른 획기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기구 및 전담인력 동원 등 종합적인 방제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임원식 의원(울진군, 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울진군 출신 임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마지막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내수경기조차도 얼어붙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대표로 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의원도 무거운 책임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193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근 지사께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독립된 지방정부 수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적 발상과 방식으로 중앙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치적 득실에 따라 이용하고자 만든 법이며, 비판적 지역에는 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국정운영 형태는 개혁의 대상이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예산을 구걸하는 이런 제도가 지속되어야 합니까?

불균형 예산지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있는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2005년 예산 편성 총액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인구 152만, 자립도 28.8%, 예산편성총액 약 2조2,000억, 전라남도 인구 200만, 자립도 21%, 예산편성총액 약 3조2,000억, 경북 인구 272만, 자립도 29.8%, 예산편성총액 2조9,000억, 인구, 자립도, 예산총액을 비교해볼 때 국가균형발전은 구호에만 그치고 편파적이며 합리성이 결여된 유독 경북지역에만 축소하여 예산을 지원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에서 최고의 교통오지인 동해안 포항, 영덕, 울진, 삼척 7번 국도 확포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목포 간 사업에 대하여 비교 질문하겠습니다.

포항, 영덕, 울진, 삼척 간 7번 국도는 연장 137km로서 1989년 착공하여 일부 구간은 완공되었으나 전구간이 완공되려면 공사가 19년이나 소요되는 2008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목포 간 서해안고속도로는 동해안 7번국도의 2.7배가 되는 연장 369.4km로서 1990년 12월에 착공, 전체구간은 2001년 준공되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한 사업구간인 당진-서천 간 103km는 '96년 착공, 4년11개월만인 2001년11월에 완공되었고, 군산-무안 구간은 114km로서 '98년4월 착공, 1조1,900억의 사업비로 국내 최단기간인 3년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해안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 건설사업을 비교해 볼 때, 김대중 정부시절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나 소외되었고, 핍박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공평 편중예산지원 대책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특정지역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동해안 주민들은 철도노선도 없이 유일한 교통수단으로는 7번국도 단일노선 하나밖에 없는 전국의 제일 열악한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36번 봉화-울진 국도 건설사업은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청송의 낙후된 지역주민은 도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 지사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역차별 정책과 불균형 예산지원을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폐기하고 자립예산을 독자적으로 수립,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광역지방정부 수립만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신행정 수도이전의 효과와 서울수도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혁신적인 정책대안이라고 보며, 수도이전특별법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수도이전이 무산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도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지방정부수립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마 충청도민들도 환영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전국광역단체장협의회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감사기능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도정이 투명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혁신이 필요하며, 몇 사람의 부정 비리 연루자들 때문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각별히 도정을 살피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본청의 각 부서, 산하기관, 23개 시·군, 재단법인의 감사를 1~3년 이내에 1회 이상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하도록 경상북도자체감사규칙에 목적, 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관과 감사요원, 종류, 범위 등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군 산하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도 경북도의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청 간부 직원들조차도 본청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본의원은 공직자의 무사안일 한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일상감사규정은 2003년4월28일 훈령 제1168호로 행정자치부 행정감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후 감사로서 시정, 치유 곤란한 공사, 각종 용역에 대한 예방적 지도감사 실시,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며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감사관실이 마비되고 시스템이 죽어 있어서야 도정이 어떻게 투명하고 건강하길 기대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정의 업무확대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각종 대형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완전 보장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 임용하고 정원을 확충, 감사책임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책감사를 강화해야 하며, 감사책임자를 전문인력으로 공모하여 도의회에서 추천받아 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감사조직을 혁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도 국회에 감사권한의 이양을 검토 연구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도 감사권한을 도의회에 이양토록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균형발전과 부서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시·군지역에 산하기관 공기업, 재단법인이 분산되어 기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경북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관부서를 이전하여 낙후된 시·군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며, 해양수산물 25개 업무는 포항, 영덕, 울진, 경주, 울릉 5개 시·군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해당지역에 이전하여 수산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어민들에게 행정민원 서비스와 함께 5개 시·군 해당공무원과 어민들이 경북 본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수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당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즉각 이전을 추진할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취업과 인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관이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관이 폭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북도와 각 산업체에서는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북도청에선 19명이 취업, 1.97%에 그치고, 민간기업에서는 2003년 1.6%, 2004년에는 1.13%로

취업률이 아주 적은 실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에서도 확대 채용해 주시고,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 개선된 1960개 곳은 시정명령 조치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사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에 대하여 도승회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는 현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대다수의 바램입니다. 대입수능시험 부정사건을 바라볼 때 본의원도 이 나라 교육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통 같은 교육부의 반개혁적인 교육정책,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구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완전한 교육의 지방자치를 하루빨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중앙 정부에 교육자치를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교육청의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은 각종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항의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장협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의회에 찾아와 집단으로 항의 농성한 부분에 대하여 엄중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법률을 개정,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도의회를 찾아와 항의 농성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처사이었음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직장협의회에 정중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와서 항의 데모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국회에 찾아가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항의 집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깨끗한 교육행정, 미래가 있는 경북교육을 위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올곧은 교육시책이 제대로 실천되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의 경북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임원식의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미비한 답변이었기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任元植議員 아, 나오셨네요. 본의원이 답변을 하면 뭐,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 예산지원, 경북지역만 유독 축소 지원되었고 또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이 부분은 뭐, 역차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任元植議員 본의원이 보충답변에 참조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독 우리 경북 지역에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지역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2005년부터는 균형특별법이 시행되어서 균특예산이 지원되지요.

○任元植議員 그러면 균형특별법에서 균특예산이 지원되는데 2005년도 예산은 강원도, 전라남도과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난 차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미비한데 지금 강원도의 인구,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우리 경북에서는 약 4조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인구, 면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약 4조5,000억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任元植議員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강원도는 작년보다 금년도가 24.48%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이. 그러나 전라남도는 2005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6.7% 증가했고 경북도는 약 9% 증가를 했는데 전라남도과 경북을 비교해 볼 때는 증액이 경북이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각종 다른 사업들이 편성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장님, 편중 예산 지원이 아닙니까?

○任元植議員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 뭐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합니까? 이런 자료들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역차별을 하는 편중 예산 지원이 맞지요?

○任元植議員 또 그러네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2000년도까지는 경북의 예산이 많았다고 했잖습니까? 2000~2004년까지 왜, 예산이 적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4조5,000억원 되면 전라남도하고 경북하고 1조6,000억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편중예산이 지원되었는 것 같으면 같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任元植議員 지원예산이 편중되었다는 것을 맞습니까?

○任元植議員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가 맞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경북지역에 예산을 축소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7번 국도하고 서해안 서울~목포간 도로를 비교했는데 우리 7번 국도는 136km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사업을 1989년도 착공을 해서 2008년도 완공하면 19년 걸립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7번 국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목포간 구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군산~무안간 연장이 114km입니다. 이 군산~무안 114km 이것은 고속도로입니다. 이 공사를 아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국내에서는 3년8개월만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任元植議員 19년이나 우리 동해안 국도 4차선 확·포장하는데 얼마나 그 피해를 경제적으로 19년 동안 단일노선에 그 기존 도로에 확·포장을 했을 때 피해를 보는지 공감을 하지요.

○任元植議員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전라북도 전주하고 남원~순창~여수간 4차선 국도 1989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쪽에만 유독 국민입니까? 주민입니까? 우리 동해안은 국민이 아십니까? 이미 1990년대 이전에 아니 1998년도 거의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다 완공이 되었는데 유독히 동해안 이쪽에 국민도 아닌지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任元植議員 그러면 경북지역에서도 중앙고속도로 개통되고 얼마있으면 포항~대구간 고속도로도 아마 준공이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유독히 우리 동해안만 이렇게 상당히 불편하도록 19년간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노력을 해서 1년이라도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元植議員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규칙이나 감사규정에 자치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독히 있는데 경상북도 본청에 감사를 1~3년에 1회 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청 감사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任元植議員 부지사님 알았습니다.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정부종합감사 이런 감사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경상북도 자체 감사규칙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도 감사를 받도록 3년 이내에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슨 관례상 안 한다는 말입니까? 위법입니까? 아십니까?

○任元植議員 그러면 감사 규칙 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任元植議員 도본청을 실·국도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任元植議員 부지사님, 내가 읽어 드릴게요. 감사방법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로 구분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1~3년에 1회 이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겨놓고 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任元植議員 정부합동 감사를 본의원 묻는 게 아니고 참, 부지사님 딱한 분이네요. 자료를 제가 감사관실에서 받았는데 사실 본청에 감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任元植議員 없다고 인정하고 법 위반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합동감사든 중앙감사를 제외하고.

○任元植議員 그러면 자치법규가 왜 필요합니까? 법을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네요.

○任元植議員 일상감사는 2003년도에 바로 예산낭비가 되니까 다시 법을 만들었고 이고 규정을, 감사규칙에 의하면 위법인데도 아니라고 자꾸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위법이라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럼 위법은 맞지요? 법은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任元植議員 실시 안 했으면 법 위법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해양문제는 뒤에 묻고 그러면 지금 감사관이 공석중이지요? 병가를 냈다고 들었는데요?

○任元植議員 그러면 공무원이 병가 내는 법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용하는 기간 그게 얼마입니까?

○任元植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관이 병가를 어느 정도 냈습니까?

○任元植議員 내년 3월까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감사관실의 존재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이 중요한 어떤 독립된 지사 직속기관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7월부터 해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이라 해서 어떻게 해서 또 3월까지 감사관을 공석이 되도록 한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업무를 못하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교체를 하지 않고 비워둔 이유는, 이걸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任元植議員 부지사님! 기획관도 할 일이 많을 건데 감사관까지 또 중복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任元植議員 부지사님! 노다지 관례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제대로 하루빨리 감사관을 유능한 감사관을 임명해서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

○任元植議員 감사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任元植議員 빨리 감사관 새로 좀 임명해서 제대로 이 경상북도 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아까 동해안 5개 시군에 해양수산물 이전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任元植議員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시간 지켜달라고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니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강원도에서는 말입니다. 약 40년 전에 이미 동해 주문진읍에 해양수산물 업무를 하는 부서를 40년 전에 이전해서 지금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이전을 해서. 그리고 경북보다도 모든 종합적으로 강원도가 앞서가 있다고 지금 본의원도 여러 확인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전을.

○任元植議員 그러면 강원도는 본청하고 정책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안 되어 가고 경북보다 수산업의 발전이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타 도를 꼭 본의원이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타 도뿐 아니라 폭넓게 검토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이미 우리 도에서도 경상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8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뿐 아니고 포괄해서 좀 검토해 가지고...

○任元植議員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검토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任元植議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의장님이 자꾸 빨리 하라 해 가지고 시간은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이시지요?

○任元植議員 2003년 3월16일자로 경상북도지사가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소방서 및 파출소, 대기소의 신축 시 시군의 장이 기부했거나 또는 이미 시군의 장 명의로 되어 있는 소방관서의 대지는 도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교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3월16일자 공문을 숙지하고 있는가?

둘째, 숙지하고 있다면 경북도내의 소방관서 대지권이 시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가? 몇 평, 시가, 소방관서 명칭,

셋째, 도유지 보유현황은 파악되어 있는가? 있다면 시군별 현황을 말해보세요.

네 번째 도유지와 교환된 관서는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소방본부장님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任元植議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리국장 나와 주십시오. 교육청 관리국장님이시지요?

○任元植議員 지난번 도의회에 교육청 직장협의회에서 항의데모를 하러 왔습니다. 그분들은 교육감이 지시해서 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왔는 겁니까?

○任元植議員 그럼 교육청 직장협의회에서는 그 권한을,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는 부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권한도 없는 도의회에 와서, 연습으로 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뭇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가서 가지고 직장협의회 하고 간담회도 하지요? 직장협의회 노조하고 간담회도 하지 않습니까?

○任元植議員 할 때 꼭 좀 본의원의 오늘 도정질문 내용하고 보충질의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전해주셔서 직장협의회 일을 잘 하도록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장께서는 2004년11월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任元植議員 한 가지 이것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영의원의 홈페이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20여년동안 경북의 모사립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49)가 그 학교 재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해온 내용이며 2004년11월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으로 최순영의원을 고발자가 찾아가서 재단 이사장 박모씨를 구두고발하면서 양심 선언한 내용입니다.

첫째 이사의 회의록 조작, 시설공사의 물품구입 시 단가조작, 수량 부풀리기, 허위 서류 작성, 관광서의 도로편입 보상공문까지 위조했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어떠

했는지 진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조세포탈 부분도 고발되었는데 이 문제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인결과는 어떠했는지,

다음 경북도교육청에서 내부고발되기 전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다음 확인하지 못했다면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元植議員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까?

○任元植議員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엄중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는 할 예정입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任元植議員 내일 감사반을 투입해서?

○任元植議員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본위원회에 서면내용들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任元植議員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너무 시간을 좀 오바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희문 의원(봉화군, 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93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도민의 복지와 전인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나라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나라사정도 어려운데 일반 서민들의 삶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기적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이 마치 암초를 만나 좌초하듯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와 사회를 잘못 이끈 위정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눈만 뜨면 지역균형개발이니 지역분권이니 떠들면서도 정작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같은 도민이면서도 국토 균형개발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새로이 태어나고 다시 한번 허리끈을 동여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도비 차등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지원 예산과 지방교부금 지원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전국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 현황을 보면, 어제 방송과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도내 자치단체 중 구미시가 0.766, 포항시가 0.606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사정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청송군은 전국 자치단체중 꼴찌인 0.065, 봉화군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0.06으로 도내의 전체 13개 군 모두가 0.4이하로 나타나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봉급조차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6월말 현재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더라도 경북도내 시단위는 6곳, 군단위로는 12곳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열악한 재정운용을 힘들게 해나가다 보니 주민의 소득 및 복리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여도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북부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풍수해 복구비 부담이 가중되어 그야말로 열악한 재정운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 시·군의 재정여력은 갈수록 떨어져 수해

복구공사는 물론이고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과의 격차 심화, 지역공동화현상 가속화는 물론 낙후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이 증폭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비지원사업 추진시에 도내지역 낙후 정도에 따라 앞서가는 지역과의 차등적 비율로 재정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자문기구인 동북아시아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 개발거점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지역별 개발거점 육성범위를 밝히고 있는데 수도권, 서남권, 동남권 등은 모두 들어가면서 유일하게 동해안권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과 위배되는 것으로, 특히 우리 도에서는 포항영일만 신히를 중심으로 환태평양시대를 열어가고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의 중심 역할을 하려는 구상에도 정면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동해안권을 포함한 U자형 개발을 수차례 건의한 후에도 이와 같은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라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U자형 개발을 강력히 건의하여 왔음에도 동북아시아위원회가 이 같은 육성계획을 발표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비균형적인 개발정책에 대하여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경북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균형적인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낙후지역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받고 있는 경북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경북 북부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서울에서 외국 CEO 300여명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가진 가운데서도 구미, 포항, 경주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경북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트 형성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경북북부지역은 단순히 낙후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산골오지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 포항, 경주 지역 등에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경북북부지역에는 중소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국내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동서 5축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안동~상주~서천을 연결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는 지난 7월 노무현대통령의 경북도 방문 때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최근 열린 중부내륙권 3도협의회의 공동발표문에도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경북도 예산에서도 동서 6축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비로 3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진~봉화~영주~천안~당진을 연결하는 동서 5축 고속도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방치되어 있어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 충청권은 동서 5축 고속도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칠 예정인데 우리 경북권에서만 답보상태를 보인다면 향후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동서 5축을 배제하고 동서 6축 고속도로를 무슨 이유로 우선시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회기에 이미 우리 의회의 장미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12월31일 백두대간보호법이 공포된 바 있으며 적용대상은 전국 6개 도 32개 시군에서 53만여 ha로 경북도에서는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봉화 등 6개 시군 31개 읍면에서 13만4,811ha가 포함되어 2005년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산줄기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한민족의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생물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그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할 것입니다. 이에 백두대간보호법은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총 684km에 이르는 구간의 53만여 ha를 보호지역으로 잠정 지정해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백두대간 정책은 지역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지역사회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해 낙후된 북부권 개발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백두대간법은 법 적용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 면적의 축소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사유지는 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선매수·후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자살자수는 전국에서 3,653명에 달하여 2000년에 비하여 3년만에 56.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살자수는 10.3%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자살자 증가율이 전체 자살자 증가율의 5.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일별로 따지자면 하루에도 10명의 노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본의원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지만 노인복지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간 갈등은 깊어가고 경로사상은 오래 전에 실종되었으며,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는 토대는 너무나 빈약하여 노년기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경북의 노인복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의 노인은 전체인구의 12.3%를 넘는 33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비율 8.7%보다 3.6%가 많은 상태이며, 특히 의성군의 경우 23.6%, 군위군은 23.5%, 봉화군은 22.2% 등으로 이들 지역은 노인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못 얻어 고통을 겪고 중년가장들도 직장에서 퇴출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경제가 나쁜 상태에서 노인까지 챙길 여유가 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노인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노인과 같은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문제에 관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북이 앞장서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실버산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우위 선점하도록 하고, 공기 좋고 물 맑은 우리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의 대폭 증설을 통하여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의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지역의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지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치매환자를 치료할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VIII. 5분 자유발언

### □ 제1차 본회의(2004. 12. 20)

#### 장하숙의원 (영주시, 기획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제가 말씀드릴 발언요지는 우리 경북도내 지역특산품 육성과 연계한 사업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1만9,025ha의 면적으로 전국의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임야가 72.3%를 차지하여 산악을 중심으로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청정자연 속에서 우리 경북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연안권의 나노사업벨트,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밸리 및 RD산업, 구미를 중심도시로 하는 중서부내륙권의 디지털 전자정보 등 IT산업, 영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자원권의 한방·농업 등 BT산업의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특산품의 육성과 관광사업 개발은 과거부터 특단의 지원책 없이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어 안타까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도내 시군별 주요특산품을 대략 살펴보면 영천·김천·경산의 포도, 안동의 간고등어·안동소주, 구미의 국화를 중심으로 하는 화훼류, 영주의 인삼·사과·한우, 상주·청도의 꽃감, 상주·군위의 쌀, 의성의 마늘, 영양·청송·예천의 고추, 고령의 딸기, 성주의 참외 등 품질 좋은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여 타도의 특산물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특산물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웰빙시대에 걸맞은 관광연계사업 육성책을 적극 추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도내 각 시군의 전반적인 특산물에 대한 육성 지원책을 언급하기에는 할애된 시간이 너무 짧기에 저의 출신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주 지역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풍기인삼이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효자노릇을 하는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000평의 부지에 991억원이 투자되는 인삼을 테마로 한 풍기인삼랜드 사업이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영주가 풍기인삼 하나의 테마를 통해 웰빙

시대에 새로운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가지 특산물로도 얼마든지 명품브랜드를 만들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북도에서는 앞으로 시군별 또는 권역별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명품화해야 함은 물론 특산물과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또 도 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등 지역특화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선정된 명품에 대해서는 통합한 특산물 이미지를 통하여 전국 및 해외를 통하는 박람회 개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도 명품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으로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은 물론 특산품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제4차 본회의(2004. 12. 16)

##### 김준호의원 (영천시, 교육환경위원회)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843억원을 투입하여 경북·대구 한방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변방에서나마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한방산업에 대한 우리 도의 한없는 열정과 불같은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사업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우리 도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는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도의 한방산업은 상주, 영주의 한방자원화단지, 안동의 한방바이오산업단지, 그리고 영천의 대규모 한약유통단지 등 3개 권역별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부서인 한방산업진흥연구원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정부가 발표한 6개 단위사업 대부분이 우리 도의 것이고, 또 이미 상당부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진흥연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도의 세 권역권중 한 곳에 존치되어야만 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둘째로 이 한방산업의 알파가 재배와 유통이라면 오메가는 기능성 식품, 화장품을 망라한 제약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종착점은 투자에 비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BT산업의 핵심 신약개발이라고 여겨집니다. 한약재, 즉 천연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적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재는 대략 500여 가지가 됩니다만. 우리나라 산야에서 채취되고 있는 것은 불과 100여종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산 한약재는 미국시장에 ‘동양의 신비한 허브’ 즉, ‘오리엔탈 허브’로 소개되어 해마다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재배와 판매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숙련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도대학의 한방 관련학과의 신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국립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한방 전문대학교의 청사진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셋째는 마케팅을 포함한 홍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문화행사,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감각과 개성이 뚜렷한 것은 안동의 하회탈춤, 춘천의 인형극제, 부산의 국제영화제, 경주의 문화엑스포 등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전국 최대의 고품질 한약재배지이며, 집산지임을 알리기 위해 풍기인삼축제, 영천한약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소규모적이고 국지적이어서 이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도 단위 문화산업행사로 육성·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인삼도 “진생 코리아”라는 상표로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1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인삼을 포함한 한약재의 대내외 홍보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 시작한 우리 한방산업은 대구시와의 원활한 관계속에서 우리 도의 변함없는 추진력과 교육청의 우호적인 협조, 그리고 도의회의 따뜻한 관심속에서 무려무려 자라 꽃을 활짝 피울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이제 조금 후에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사다난한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채희영의원 (문경시, 산업관광위원회)

오늘 아침 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 간에 싫은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각자가 자기 몫 챙기는 것에 충족하다 보니까 도의원으로서의 신분도 망각하고 시군의원으로 전락한 그 모습뿐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상위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은 엄격히 존중해 준다고 원칙을 세워놓고도 그 원칙이 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동안 고생했으니까 15억을 까서 예결위원 한 사람앞에 1억씩 나누어 가지자고도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간곡한 만류와 거절에 의해서 그 말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상위에서 중복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한 부분을 예결에서 살려내어 줌으로 인해서 상위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회는 계수조정위원회를 두 파트로 만들어서 각각 문화체육관광국과 경제통상실 파트로 나누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한 대로 위원장은 방망이를 쳐서 예결로 넘겼습니다. 그 넘긴 것이 원칙이 준수 안 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 몫 챙기기를 충실히 한다면 본 위원장도 문경의 농업인회관 7억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을 때 그것을 살려달라고 전화라도 한 마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어도 상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결에 가서는 대통령도 못 살린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예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상위를 만들어놓고 상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서 예결로 넘김니까? 적어도 흠결사항이 완벽하고 하자 있는 예산이었다면 삭감하고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자기가 출신 지역의 사업들을 챙기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2005년도 예산안을 이 곳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이 결정된 사항은 존중합니다마는, 아직도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아 있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지성에 가깝고 판단력이 옳은 그런 행동들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립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끼리 오고간 말들을 볼 때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부 록

- 조 례 안 : 7건
- 예 산 안 : 2건
- 동 의 안 : 19건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조례안 : 7건】**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
-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산업관광위원회”를 “경제문화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산업관광위원회”를 “경제문화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b>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 style="padding-left: 20px;"><b>(신설)</b></li> <li>3. 행정사회위원회 10명 이내</li> <li>4. 교육환경위원회 10명 "</li> <li>5. 농수산위원회 10명 "</li> <li>6. 산업관광위원회 10명 "</li> <li>7. (생략)</li> </ol> <p><b>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 style="padding-left: 20px;"><b>(신설)</b></li> <li>3. 행정사회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경도대학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li>4. 교육환경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나.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li>5. 농수산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li>6. <u>산업관광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u>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li> </ol> </li> <li>7. (생략)</li> </ol>	<p><b>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경제문화위원회 10명 이내</u></li> <li>4. 행정사회위원회 10명 이내</li> <li>5. 교육환경위원회 10명 "</li> <li>6. 농수산위원회 10명 "</li> <li style="padding-left: 20px;"><b>(삭제)</b></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b>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u>3. 경제문화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u>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li> </ol> </li> <li>4. 행정사회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경도대학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li>5. 교육환경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나.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li>6. 농수산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li style="padding-left: 20px;"><b>(삭제)</b></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b>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현행과 같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b>6. 경제문화위원회 10명 이내</b></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b>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현행과 같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b>6. 경제문화위원회</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u>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li> </ol> </li> <li>7. (현행과 같음)</li> </ol>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본문 중 “3,810명”을 “3,835명”으로 하고, 동조제 1호 집행기관의 정원 “1,750명”을 ”1,775명”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복식부기업무 담당인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810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750명</u> 2.~4.(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u>3,835명</u>..... .....</p> <p>1..... : <u>1,775명</u> 2.~4.(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고엽제후

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를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자”로 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16조의 제목“(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p>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후단생략)</p>	<p>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 ----- ----- ----- (현행과 같음)</p>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① ----- ----- ----- ----- -----</p>
<p>1. <u>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u></p>	<p>1. <u>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u></p>
<p>2.~4(생략)</p>	<p>2.~4(현행과 같음)</p>
<p>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u></p>	<p>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u></p>
<p>6. <u>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u></p>	<p>6. <u>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u></p>
<p>7. <u>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p>	<p>7. <u>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u></p>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

2004. 12. 2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5조에 의거 경상북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대학은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2장 대학의 구성

제3조 (교직원) ①대학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대학에 두는 교원과 조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학과·계열장) ①대학의 각 학과 및 계열에는 학과·계열장을 둔다.

②학과·계열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계열의 교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5조 (하부조직)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장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부속기관 등) ①대학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 등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관련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속기관 등의 설치는 학칙으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정한다.

### 제3장 대학운영특별회계

제7조 (설치)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7조에 의거 대학에 대학운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적용범위) 회계의 적용범위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관리,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한정한다.

제9조 (재정) 대학의 운영비는 등록금과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재정으로 충당한다. 다만, 대학 설치지역에 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회계는 대학의 학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1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2. 도의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4.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5. 기부금 등 기타수입금

제12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대학의 운영·관리비
2. 대학의 연구개발 및 사업비
3.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
4. 예비비 등 기타 경비

제13조 (전입금 등) 대학운영을 위하여 도의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역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을 이 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①대학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6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4장 대학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제18조 (설치) 대학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대학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대학교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기능) 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의 고충에 대한 사항을 심사·처리한다.

제20조 (심사 대상) ①대학교충위원회는 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②조교수이하의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교충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21조 (기능 관장) 대학교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22조 (구성) ①대학교충위원회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2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29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대학운영위원회

제30조 (설치) 대학의 발전과 대학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중·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 및 대학행정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대학의 운영상 도지사 또는 학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사항

제3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도 및 대학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회의)**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 개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37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장 감 독

**제39조 (감독 및 승인 등)** ①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도지

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계열의 설치 및 개폐
2. 학생 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4.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과 등의 교수보직에 관한 사항
2. 부속기관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장 보 칙

제40조 (적용 및 위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학사행정 관리와 학장 및 교육공무원의 자격기준·임용·보수·신분보장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교육 및 교육공무원 법령을 적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 조례 및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운영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12. 2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 35 ” 를 “ 20인 ” 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로 한다.

동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중 “50”을 각각 “100”으로 하고, “3”을 각각 “6”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및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도지사는 도외소재 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

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도지사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5조 제2항중 “30”을 “50”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제2항중 “20% 범위안에서”를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로 한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17조”를 “제17조 및 제18조 제3항”으로 하고, 제1호의 “기업유치촉진지구”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법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적용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

2004. 12. 2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상북도(이하"도" 라 한다.)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도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
3. 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2. 도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본부장
3.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4. 제50보병사단장
5. 경상북도교육감
6.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7.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

2004. 12. 2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도 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도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도지사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안 : 2건】**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예산 : 2,991,314,000천원

○ 일반회계 : 2,363,800,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특별회계 : 627,514,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예산 : 2,991,314,000천원

○ 일반회계 : 2,363,800,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내역 : 별첨)

○ 특별회계 : 627,514,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 예산안 증·감조서

###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고
		총 계	5,028,000	
	기획관리실	3건	500,000	
65		대구경북개발연구원용역비	100,000	
69		각종단체지원(공통)	100,000	
93		변압기및차단기교체(김천의료원)	300,000	
	경제통상실	5건	630,000	
853		전략차세대성장동력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	30,000	
863		경북기술이전센타지원	50,000	
879		동북아비즈니스촉진대회	50,000	
880		동북아자치단체연합상설사무국운영비	50,000	
888		시외버스재정지원	450,000	
	자치행정국	2건	515,000	
175		칭찬도정운동평가용역	15,000	
176		농어촌특례입학대학육성지원	500,000	
	문화체육관광국	2건	700,000	
919		문화엑스포행사준비및시설보수	400,000	
932		도청실업팀육성(6개팀)	300,000	
	농수산국	5건	901,000	
559		인삼랜드조성사업	500,000	
559		명주박물관건립	200,000	
564		한우품평회경진대회	100,000	
569		경주마육성사업	41,000	
569		경북브랜드육전문판매장지원	60,000	

##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고
	보건환경산림국	4건	294,000	
364		청소년척추측만증검진	19,000	
364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운영비(이양)	75,000	
372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150,000	
410		원당로도시생태숲조성	50,000	
	사회복지여성국	1건	200,000	
262		호국의다리및호국광장조성	200,000	
	건설도시국	1건	500,000	
1010		지방도유지관리	500,000	
	농업기술원	2건	730,000	
744		농업인회관및농업기술센타신축	700,000	
770		전통명주생산용누에고치구매	30,000	
	의회사무처	4건	58,000	
25		의회운영업무추진	1,000	
25		의회업무추진	2,000	
25		의사업무추진	1,000	
29		민간위탁금	54,000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고
		총 계	5,028,000	
		소 계	4,889,500	
	경제통상실	2건	50,000	
863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지원	30,000	
865		중소기업자동화기술지원센터지원	20,000	
	자치행정국	2건	351,200	
157		문화탐방및체험교실운영	20,000	
157		보육수당	331,200	
	문화체육관광국	3건	320,000	
919		경상북도시조경연대회지원	20,000	
932		안동시민운동장개보수	200,000	
932		ATA태권도월드챔피언쉽대회지원	100,000	
	농수산국	1건	43,500	
543		폐비닐전용수거비지원공급	43,500	
	보건환경산림국	5건	389,000	
364		공공보건기관근무자해외연수지원	19,000	
372		지방의제21	50,000	
372		환경친화마을조성	100,000	
399		임업인해외연수지원	20,000	
401		산림병해충방제	200,000	제선충방제
	사회복지여성국	6건	223,000	
256		전국농아인체육대회	5,000	
256		도상이군경복지회관운영비지원	80,000	
256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지원	75,000	
259		지체장애인상담사업지원	24,000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 고
	사회복지여성국			
261		시군지회교통사고피해상담센타지원	20,000	
269		우수모범경로당시상	19,000	
	농업기술원	1건	4,800	
739		농촌지도자우수회원해외연수	4,800	
	의회사무처	3건	68,120	
21		인건비	14,000	
21		일시사역인부임	9,000	
23		전화료	45,120	
	예비비		3,439,880	

**【부기신설】**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 고
		총 계	138,500	
	경제통상실	1건	50,000	
864		308-01 어린이우주과학관운영비지원	50,000	
	농업기술원	1건	30,000	
726		301-07 생활개선회임원해외연수	12,750	
738		301-01 생활개선회우수회원해외연수	17,250	
	의회사무처	3건	58,500	
25		각종행사및의전업무수행비	4,000	시책업무추진비
30		휴게시설등청사환경정비	31,000	시설비
30		의원단말기구입	23,500	자산취득비

**【부기조정】**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예산액	비 고
	문화체육관광국	1건	1,600,000	
932		도청실업팀육성(보디빌딩) ⇒ 도청실업팀육성(6개팀)	326,000 ⇒1,600,000	
	사회복지여성국	1건	19,000	
269		우수모범경로당시상(9개소) ⇒ 우수모범경로당시상	19,000	

**【과목정정】**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예산액	비 고
	경제통상실	1건	286,000	
853		도청실업팀육성(요트) 경제통상진흥, 경제진흥사업 ⇒ 체육진흥및청소년육성,체육진흥사업	286,000	
	자치행정국	1건	340,000	
158		도청실업팀육성(세팍타크로) 자치행정, 총무관리 ⇒ 체육진흥및청소년육성,체육진흥사업	340,000	
	농수산국	1건	215,000	
532		도청실업팀육성(수영팀) 농정개발, 농정개발사업 ⇒ 체육진흥및청소년육성,체육진흥사업	215,000	
	보건환경산림국	2건	333,000	
362		도청실업팀육성(수중팀) 보건위생, 보건위생사업 ⇒ 체육진흥및청소년육성,체육진흥사업	225,000	
469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징수교부금	108,000	
	건설도시국	1건	208,000	
975		도청실업팀육성(카누) 지역개발, 도시계획사업 ⇒ 체육진흥및청소년육성,체육진흥사업	208,000	

#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 예산

○ 예산액 : 2,065,014,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 예산

○ 예산액 : 2,065,014,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 (내역 : 별첨)

## 2005년도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 증감조서

###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 고
	교육청	11건	2,909,745	
760		박테리아미네랄워터시설설치	70,000	
979		교류협력국(일본)방문	16,200	
979		교대추진설립경비	26,000	
979		교류협정국(일본)방문수행여비	7,200	
979		소년체전및학도체전참관	4,720	
996		자율특색사업추진지원비	700,000	
1009		입시제도개선연구비	30,000	
1078		경상교육지원비	600,000	
1078		투자교육지원비	1,400,000	
1078		감사공보관실	40,025	
1078		중등전문직타시도현장연수	15,600	

###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 고
계	교육청	1건	2,909,745	
1393		예비비	2,909,745	

## 【동의안 : 19건】

- 2005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 2007학년도개교학교신설비지방채발행안
- 2005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5년도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 11. 11

나.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4. 11. 12

라.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상정, 질의, 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남성대)

### 가. 제안이유

-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 (나) 설치근거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다) 설치목적 : 경상북도 소속(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라) 설치년도 : 1993년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395	1,067	1,607	△540	855	
· 융자금회수수입		880		880		
· 기금운용이자수입 등		187		187		
· 융자금 대부			1,600	△1,600		
· 기금관리비			7	△7		

(나)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다) 지원기준

구 분	금 리	용 자 기 간	용 자 신 청	용자한도
주택매입자금 대부	년3%	대부익월부터 10년	매매(분양)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3,000만원
전세자금 대부	"	대부익월부터 5년	전세 계약일로 부터 2개월이내	2,000만원

(라) 지원대상 : 도소속(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급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5년이상 근속하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현의)

####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 무주택 하위직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93년에 도의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대부대상과 용도별 지원금액은
  - 신청일 현재 5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도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에게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년 3%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부익월부터 10년간 대부하며
  - 전세자금은 년 3%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부익월부터 5년동안 대부하고 있음.
- 2004년 10월말 현재까지 대출연금 4,000백만원과 대출이자 등 5,9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663명에게 10,335백만원을 대부하여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2005년도중의 기금운용계획은

- 2005년도말 현재액은 855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395백만원의 38.7%인 540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수입금 내역은

- 융자회수금 880백만원
- 융자대출금 이자수입 128백만원
- 공공예금 적립금 이자 60백만원 이며,

○ 주요 지출금 내역은

- 융자대부금 1,600백만원
- 기금위탁관리비 7백만원 입니다.

○ 또한 대부계획 인원은 총 60명으로서 주택매입자금은 40명이며, 전세자금은 20명입니다.

○ 기금운용의 기본재원이 되고 있는 융자금대출이자 수입액이 전년도 예산액 116백만원보다 12백만원 증가한 것은 대부금융자 한도가 상향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액이 전년도 예산액 71백만원의 15.5%인 11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율이 4%대 이하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을 회수 하거나 융자금대출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

으로서는 대부 및 상환 위탁관리비와 융자금, 적립금 등의 고유목적에 집행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지출내역 모두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아파트 분양금액 등 주택마련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2004년 3월부터 대부 한도금액의 상향조정으로 매월 상환되는 회수금액에 비해 융자대부에 따른 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 잔액이 지나치게 감소되므로써 익년도 기금운용 사업이 다소 위축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한 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신규 출연 등,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 11. 11

나.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4. 11. 12

라.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상정, 질의, 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 가. 제안이유

- 저소득층 주민, 노인 등의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이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의 운용 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음.

### 나. 주요골자

####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나)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다) 설치목적

- 저소득주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사업, 자활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추진

(라) 설치년도 : 1964년(2000년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통합을 위한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5,886	226	218	8	5,894	

(나) 재원조성 : 국비, 도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다) 지원기준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용자
  - 용자한도 : 70,000,000원
  - 금 리 : 3%/년
  - 용자기간 :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자활공동체의 금융기관대여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이율 5%범위내 지원가능)

-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등록금, 고등학생 수업료 범위내

(라)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공동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학기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고등학생 : "미"이상 과목이 40/100이상
  - 대학생 : 평균 "C"학점(평점2.0)이상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현의)

□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주민, 노인 등의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과 자활자립의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 2005년도말 현재액은 5,894백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5,886백만원대비 0.1%인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백만원
- 융자금회수(이자) 2백만원
- 2004이월금(순세계잉여금) 296백만원
- 예치금회수 5,59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에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38백만원
  -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대여 180백만원
  - 차년도 이월금으로서 예치금 5,894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기금운용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당해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224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53백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29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예금 금리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과 검토할 사항으로서는

- 주요사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사업으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재적학생의 100분의 40이내에 들어 가는 자, 대학생의 경우 평균 C학점 이상으로 평점2점 이상의 성적 우수자를 선발(97명)하여 1인당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씩 총 38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사업은 180백만원의 사업비로써 3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공동체별로 평균 60백만원씩(대부조건 : 금리 년 3%, 5년거치 5년균분상환) 지원할 계획임.
  - 이러한 자활공동체사업자 금융제도는 2002년도부터 도입된 특수 시책사업으로써 당해연도에는 자활공동체가 설립단계에 있어 신청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 2005년도에는 동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은행의 생업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편승하여 사회복지기금의 금리도 3%이하대로 인하 하는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인 자활 공동체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의 2005년도 수입·지출 운용내역은 신규 출연금이 없는 수입항목을 제외하고, 지출내역에서 모든 지출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 사회복지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장학금 지급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 지난 2000년 도비 출연이후 전적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금 운용이 지속되는 금리 하락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이자수입만으로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동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사회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 11. 11

나.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4. 11. 12

라.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상정, 질의, 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 가. 제안이유

- 재해구호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나)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

(다) 설치목적 : 재해구호 비용부담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적립

(라) 설치년도 : 1972년(조례제정일 1989. 7. 6일)

## (2) 기금조성 및 운용

###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14,237	541	532	9	14,246	

(나) 재원조성 :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 (다)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기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비</li> <li>• 토지 또는 건물사용 및 시설·물자의 우선사용에 따른 보상금</li> <li>•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의 사전집행</li> <li>•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른 응급 구호지원</li> <li>• 재해구호물자의 조작 및 운송경비 등</li> </ul>	2005.1.1 ~12.31	2005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보건복지부 재해구호 사업 지침

(라) 지원대상 : 한해, 수해, 풍해 등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내에서 발생한 다수 이재민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현의)

###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은

-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의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5/1000이상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법 제15조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조례제정일 : 1989.7.6)에 의거 예기치 못한 한해, 수해, 풍해 등의 재해로 인해 동일한 지역내에서 발생한 이재민을 구호하고,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7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 기금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14,246백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14,237백만원 대비 0.1%인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541백만원
- 2004이월금(순세계잉여금) 473백만원
- 예치금회수 13,76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에서

- 생필품 등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16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370백만원
- 구호물품 비축창고 운영비(4개소) 2백만원
- 예치금 14,246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도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재해구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 중 보통세액 연평균액의 30/1,000을 초과 하였기 때문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54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77백만원의 6.7%에 해당하는 36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예금금리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으로서는

- 보건복지부 재해구호사업 지침에 의하여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의 사전집행,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른 응급구호 지원, 재해구호물자 운송경비 등으로 이용되며
- 갈수록 기후환경과 기상조건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들이 급증하고 피해지역도 대규모화되고 있으므로 재해구호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재해재난의 예방과 이재민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은 앞으로도 재해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2005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는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 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 11. 11

나.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4. 11. 12

라.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과,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

(나) 설치근거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다) 설치목적

-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

(라) 설치년도 : 1997. 8. 13(경상북도 조례 2447호)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상북도장애인 복지기금	2,080	75	70	5	2,085	

(나) 재원조성 : 도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다) 지원기준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 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라)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현의)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은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자활 의욕을 고양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협회의 건전한 육

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목표액 20억원을 정하여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적립한 결과 20억 8천만원을 조성하였음.

- 기금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2,085백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2,080백만원 대비 0.2%인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75백만원
- 2004이월금(순세계잉여금) 7백만원
- 2005만기예치금(예치회수금) 2,07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 지출항목에서

- 저소득장애 자녀 간접학비 지원 60백만원
- 장애인단체 10백만원
- 예치금 2,085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기금운용의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는 당해연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전년도 이자수입과 동일한 75백만원이 되며, 기금이자 수입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지속적인 적립기간을 거쳐 2003년도 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저소득 장애 자녀 간접학비에 60백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운영비 10백만원 등 총 70백만원이 계상되어 기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은

-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협회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이제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만큼, 앞으로는 기금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지원 운용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 2005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지출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 11. 11

나.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4. 11. 12

라.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 가. 제안이유

- 노인여가시설의 관리·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의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

(나)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

- (다) 설치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
- (라) 설치년도 : 1994년 1월 12일(조례제정일 1994년 1월 12일, 조례 제2240호), 4차 개정 '99.7.12 조례 제2575호

## (2) 기금조성 및 운용

###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상북도노인 복지기금	2,467	100	100	0	2,467	

(나) 재원조성 : 도비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다) 지원기준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지회 육성, 노인들의 건강, 여가,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 증진사업

(라) 지원대상 : 경상북도 노인 및 노인단체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현의)

### □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은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의 복지기반을 증진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 기금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2,46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과 동일함.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백만원
- 예치금 회수 2,46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에서

- 노인회사업 추진 46백만원
- 민간자본보조(건강기구구입) 54백만원
- 기금적립금 2,46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적립금을 제외하고 기금운용의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는 당해연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100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3백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으로서는

- 당해연도의 예치금회수(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과목경정)가 2,467백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2,466백만원과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기금 조성액은 전적으로 기금적립 이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세출항목의 고유목적 사업비중에서
  - 노인회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건강기구 구입은 전년도 보다 3.57%가 감액 계상되었는바 이는 최근 들어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원인으로서는

- 앞으로는 기금 적립액을 점차 확충해 나가는 한편, 시군의 노인 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 지출내역의 항목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계상 하였거나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점차 기금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운영은 지난 2000년 이후 신규재원의 출연없이 전적인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금활용도 노인회 사업과 건강기구 구입사업에 제한적으로 지원 되는 등, 소극적으로 운용되어 온 만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기금 확충노력과 아울러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 11. 11

나.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4. 11. 12

라.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상정, 질의, 토론

마. 의결일자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3)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여성국장 권양자)

### 가. 제안이유

-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가) 기금명칭 :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나)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영조례

(다) 설치목적 :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라) 설치년도 : 1999년

##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경 상 북 도 여성발전기금	2,803	617	-	617	3,420	

(나) 재원조성 : 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

(다) 지원대상

-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사업의 지원
-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 및 운영의 지원 등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현의)

### □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은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 기금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3,420백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2,803백만원 대비 22.0%인 61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수입·지출내역은

○ 수입항목에서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백만원
- 도비 출연금 500백만원
- 2004이월금(예치금회수) 2,80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항목은 조성 기금액인 3,420백만원 전액을 예치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음.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으로서는

-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99년부터 2004년도까지 6개년 동안 총 3,000백만원을 조성할 목표를 세워 추진해 왔으나 2004년까지 총 2,500백만원의 기금을 출연하는데 그쳤으며,
- 따라서 2005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인 500백만원만을 신규 출연 하여야만 당초 조성목표액 3,000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 수입과 지출내역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여성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용해 나가는 것과

아울러 2005년부터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는 만큼, 앞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11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2004년 12월 3일 상정·질의·토론·의결)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  
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 III. 기금내역

- 기금명칭 : 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 설치년도 : 1989. 1. 1(조례 제2675호, 2001. 1. 4)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 (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식품진흥기금	15,154	3,342	3,198	144	15,298	

○ 재원조성 :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 지원기준

구 분	금리	용자기간	용자비율	용 자 한 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 자 금	연 3% (화장실 연1%)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제조·가공업 : 5천만원</li> <li>· 식품접객업 등 : 3천만원</li> <li>· 화장실(별도) : 1천만원</li> <li>· HACCP 적용업소 : 2억원</li> </ul>

※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식재료의 구매·검수·보관 및 조리·운반·배식·세척 등 관리 기준을 말함.(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IV. 기금운용 내용

○ 자금수지 총괄 <표 1>

○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 2백만원 보다 19억 5천 6백만원(11%)이 감액된 158억 4천 6백만원임.

〈표 1〉

## 자금수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수입·지출	15,846	17,802	△1,956	11.0

### ○ 수입 예산에서 〈표 2〉

-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1.9% 증액된 7억 7천 9백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및 용자금 이자임.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99.9% 감액된 3백 7십만원으로 200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임
- 용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1% 증액된 20억 2천 3백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용자금 회수 수입임
- 잡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6.7% 감액된 5억 4천만원으로 과징금 수입금임 (약 500건)
- 예치금 회수 수입은 신년도 새로이 발생하는 수입으로 125억원이며, 2005년도 만료되는 예치금 회수 수입임.

〈표 2〉

## 수입예산내역

(단위: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계	15,846	17,803	1,957	△11.0
이 자 수 입	779	697	82	17.8
순세계 잉여금	4	14,457	△14,453	△99.9
융자금 원금수입	2,023	2,001	22	1.1
잡 수 입	540	648	△108	△16.7
예 치 금 회 수	12,500	0	12,500	신규

○ 지출 예산액은 〈표 3〉

○경상예산은

-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5% 감액된 3억 7천만원으로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행사 실비 보상금임

○사업예산에서는

-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5% 감액된 27억 1천 백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사업과 신규위생업주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 식품접객·제조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위한 예산임

○기타 내부거래는

- 기금 적립금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4% 감액된 126억 4천 8백만원으로서 융자금 준비에 따른 기금적립금임

○ 예비비 및 반환금기타에서

- 예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2.9% 증액된 1억원이며
- 반환금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3.7% 증액된 1천 4백만원임.

〈표 3〉 지출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계		15,846	17,803	△1,957	△11.0
경 상 예 산		370	409	△39	△9.5
사업예산	소 계	2,714	3,500	△786	△22.5
	민 간 이 전	184	370	△186	△50.3
	자치단체등 이 전	30	0	30	신규
	자치단체등 자 본 이 전	0	20	△20	△100
	자산취득비	0	310	△310	△100
	용 자 금	2,500	2,800	△300	△10.7
예 치 금		12,648	13,813	△1,165	△8.4
예 비 비		100	70	30	42.9
반 환 금 기 타		14	11	3	27.3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영문)

□ 수입예산 부문

○ 기금 수입증대 방안 강구

- 2005년도 수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 수입이 125억원, 용자금원금수입이 20억 2천 3백만원으로서, 총수입예산 158억 4천 6백만원의 91.7%를 차지하며
- 실질적인 기금증식에 도움이 되는 수입은 이자수입과 잡수입으로 전체수입의 8.3%에도 못 미치는 바,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기금적립은 금융기관별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립방법과 적립기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립금 이자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지출예산 부문

### ○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원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심의·의결 후 금융기관 검토에서 탈락되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지원기금의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 지원기금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용자 한도가 2억원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시설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실적 저조

-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 151억원이 있으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28억원을 용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61개 업소에 12억 81백만원(45%)으로 부진한데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업체의 시설개선 투자를 미루는 경향도 있으나 적극적인 자구노력 등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11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2004년 12월 3일 상정·질의·토론·의결)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 III. 기금개요

- 기금명칭 :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
- 설치근거 :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 설치목적 : 학업 및 예체능우수, 산림유공자 자녀 등 장학금 지급
- 설치년도 : 1976년도 (조례 제790호, 1976. 11. 22)
-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경상북도포플라 장 학 기 금	219	8	8	0	219



<표 2>

## 수 입 내 역

(단위: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85	228	△143	△62.3
이 자 수 입	8	9	△1	△11.1
순세계 잉여금	0	219	△219	△100
예 치 금 회 수	77	0	77	신규

○ 지출 계획은 <표 3>

○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1.1% 감액된 8백만원으로서 학업·예체능 우수자나 산림유공자 자녀 23명에게 지급할 장학금이며

○ 예치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64.8% 감액된 7천 7백만원으로 기금 예치금임

<표 3>

## 지 출 계 획

(단위: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85	228	△143	△62.7
일반보상금	8	9	△1	△11.1
예 치 금	77	219	△142	△64.8

##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영문)

### □ 수입예산 부문

#### ○ 기금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 동 기금의 수입원은 지금까지 이자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나 저금리시대의 기금 증식 수단으로 부적합하며 다년간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으므로, 당초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장학사업을 펼치기에는 재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기금 출연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지출예산 부문

####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전년도까지는 중·고등학생으로 했으나 신년도 예산편성에는 고등학생만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에 부합되는 조처라 판단되며
-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당초 본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Ⅶ.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7학년도개교학교신설비지방채발행안

## 심 사 보 고 서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10일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2004년 12월 6일 상정·질의·토론·의결)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 III. 지방채 발행 사유

2007학년도 개교학교 부지매입 및 시설에 필요한 부족재원  
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하고자 함.

### IV. 지방채 발행 계획(안)

- 사업명 : 2007학년도 개교학교 신설비
-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승인액 : 26,409백만원
  - 초등학교(3) : 25,271백만원, 중학교(1) : 1,138백만원
- ※ 총 소요액 : 42,470백만원(기투자 : 220백만원)

- 지방채 발행 : 26,409백만원
- 2005년 교부금 : 7,071백만원
- 2005년 이후 확보 : 8,770백만원

#### ○ 차입계획 및 조건

- 차 입 선 : 금융기관채 증서차입
- 차입조건 :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리 4.37%, 변동금리)
- 차입시기 : 2005년도
- 상환부담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신설 교부금으로 상환

###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영문)

#### ○ 학교 신설계획은

-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아동수용과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하여 2007학년도 개교예정인 포항지역 환호 초등학교를 비롯한 2개 초등학교와 경주 금장중학교 신설을 위한 것임.
- 부지매입 및 시설비 예산은 총 424억 7천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 기투자액 2억 2천만원을 제외한 422억 5천만원 중 70억 7천 1백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으로, 264억 9백만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87억 7천만원은 2005년 이후 확보예정으로 되어있음.

- 지방채 발행 및 상환조건은 금융기관채 증서로 차입하여 연리 4.37% 변동금리로 1년거치 2년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5년도에 차입하며 상환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으로 상환할 계획임.

## ○ 학교 신설사유는

- 초등학교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또는 택지지구 지정 등으로 2007년까지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생수요를 충족하고, 기존학교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 중학교의 경우도 인구증가로 인한 과밀·과대학급의 급당 인원을 30명이내로 감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됨

## ○ 지방채 발행규모 및 시기의 적정성 여부

-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부족으로 70억 7천 1백만원은 교부 예정 통지되고, 264억 9백만원만 기채승인 되어 앞으로 부족분 87억 7천만원에 대한 확보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사신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개교 2년 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업비 교부를 개교 전년도에 교부함으로써 개교와 동시에 수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방채 발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07년도 학교 개교를 원만히 추진하여 2세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지방채 차입시기를 적절히 판단하여 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과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제안자) : 200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2004. 12. 7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 : 농수산국장 임 광 원

나. 제안이유

- 2005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3. 운용총칙

(1) 기금명칭 : 농어촌진흥기금

(2) 설치근거 : 농어촌진흥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33조

(3) 설치목적 :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위주의 지원으로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1지역1명품육성 및 품질향상 도모

(4) 설치년도 : 1993년 (2001. 1. 4 전면개정)

##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1)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2005년도 운용 계획			2005년도말	비고
	현재액(A)	수 입	지 출	증감(B)	현재액(A+B)	
농어촌진흥기금	57,682	13,332	21,407	△8,075	49,607	
농어촌발전기금	53,763	12,327	20,000	△7,673	46,090	
농수산물유통기금	2,202	526	804	△278	1,924	
1지역1명품육성기금	1,717	479	603	△124	1,593	

### (2) 재원조성

- 농어촌발전기금 : 출연금, 이자수입, 융자금 상환
- 농수산물유통기금 : 출연금, 융자금 상환, 이자수입
- 1지역1명품육성기금 : 교부세, 출연금, 융자금 상환, 이자수입

### (3) 지원기준

구 분	금리	용 자 기 간	용 자 비 율	용 자 한 도
농 어 촌 발 전 기 금	2.5%	3년거치7년균분상환	· 시설자금	· 개인 1억원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민조직, 수출업체 2억원 · 농·수·축협 및 특수조합 5억원
	2.5%	3년거치7년균분상환	· 벤처농업육성자금	
	2.5%	2년거치3년균분상환	· 수출자금	
	3.0%	1년거치2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농수산물 유통기금	3%	2년거치3년균분상환	· 농수산물직판사업, 산지매취 사업,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 가공사업 등 농수산물유통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1지역1명품 육성기금	2%	2년거치3년균분상환	· 1지역1명품단지확대 조성 및 관측홍보사업에 필요한 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대상

- 농어촌발전기금 : 농수산업 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대체 작목개발과 생산시범사업, 품목별 수출협업단지육성 및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육성사업, 벤처농업육성사업,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유통기금 : 농수산물직판사업, 산지매취사업,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가공사업 등 농수산물유통사업
- 1지역1명품육성기금 : 고유브랜드,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 품질개선, 시설자동화 및 확충, 가공원료 확보, 기술개발 등

## 4.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

###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 감 율 (%)
수입 · 지출	71,013,590	56,010,708	15,002,882	26.8

⇒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560억 1천 1백만원의 26.8%인 150억 3백만원 증액된 710억 1천 4백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수입 · 지출	66,089,820	51,623,394	14,466,426	28

(2) 농수산물유통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수입·지출	2,728,287	2,935,920	△207,633	△ 7.1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수입·지출	2,195,483	1,451,394	744,089	51.3

나. 수입계획 총괄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71,013,590	56,010,708	15,002,882	26.8
· 전년도 이월금	17,657,925	43,041,195	△25,383,270	△59
· 출 연 금	1,500,000	1,500,000	0	0
· 용 자 회 수	10,243,946	10,100,613	143,333	1.4
- 원 금	9,454,068	8,855,918	598,150	6.8
- 이 자	789,878	1,244,695	△454,817	△36.5
· 적립금 이자	1,588,089	1,368,900	219,189	16
· 예치금 회수	40,023,630	0	40,023,630	100

⇒ 전년도예산액 560억 1천 1백만원의 26.8%인 150억 3백만원이 증액된 710억 1천 4백만원으로

○ 전년도 이월금 176억 5천 8백만원

○ 출연금 15억원

- 용자금 회수액 102억 4천 4백만원
- 적립금이자 15억 8천 8백만원
- 예치금회수 400억 2천 4백만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66,089,820	51,623,394	14,466,426	28
· 전년도 이월금	16,100,000	40,919,848	△24,819,848	△60.7
· 출 연 금	1,500,000	1,500,000	0	0
· 용 자 회 수	9,297,190	7,848,546	1,448,644	18.5
- 원 금	8,579,135	6,718,388	1,860,747	27.7
- 이 자	718,055	1,130,158	△412,103	△36.5
· 적립금 이자	1,530,000	1,355,000	175,000	12.9
· 예치금 회수	37,662,630	0	37,662,630	100

(2) 농수산물유통기금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2,728,287	2,935,920	△207,633	△ 7.1
· 전년도 이월금	934,322	1,306,879	△372,557	△28.5
· 용 자 회 수	498,355	1,618,741	△1,120,386	△69.2
- 원 금	450,200	1,534,200	△1,084,000	△70.7
- 이 자	48,155	84,541	△36,386	△43
· 적립금 이자	27,610	10,300	17,310	168.1
· 예치금 회수	1,268,000	0	1,268,000	100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2,195,483	1,451,394	744,089	51.3
· 전년도 이월금	623,603	814,468	△190,865	△ 23.4
· 용 자 회 수	448,401	633,326	△184,925	△ 29.2
- 원 금	424,733	603,330	△178,597	△ 29.6
- 이 자	23,668	29,996	△6,328	△ 21.1
· 적립금 이자	30,479	3,600	26,879	746.6
· 예치금 회수	1,093,000	0	1,093,000	100

다. 지출계획 총괄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71,013,590	56,010,708	15,002,882	26.8
·민간이전	7,000	4,600	2,400	52.2
·용자금	21,400,000	17,300,000	4,100,000	23.7
·예치금	49,606,590	38,706,108	10,900,482	28.2

⇒ 2005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예산액 560억 1천 1백만원의 26.8%인 150억 3백만원이 증액된 710억 1천 4백만원으로

○ 민간위탁금 7백만원

○ 용자금 214억원

○ 예치금 496억 7백만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기금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66,089,820	51,623,394	14,466,426	28
·용자금	20,000,000	15,000,000	5,000,000	33.3
·예치금	46,089,820	36,623,394	9,466,426	25.9

## (2) 농수산물유통기금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2,728,287	2,935,920	△207,633	△ 7.1
· 민간이전	4,000	3,400	,600	17.7
· 용 자 금	800,000	1,700,000	△900,000	△52.9
· 예 치 금	1,924,287	1,232,520	691,767	56.1

## (3) 1지역1명품육성기금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계	2,195,483	1,451,394	744,089	51.3
· 민간이전	3,000	1,200	1,800	150
· 용 자 금	600,000	600,000	0	0
· 예 치 금	1,592,483	850,194	742,289	87.3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먼저 수입예산 부문은

- 전년도 대비 26.8% 증액된 710억 1천 4백만원으로 이는 예치기한 및 용자기간 도래된 예치금과 용자금의 회수등으로 예산액은 증액되었으나 최근 금리하락 등으로 인한 용자금의 이자수입은 다소 감소가 예상되며
- 또한 국내 경기불황과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요구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들의 기금

지원사업 확대요구를 감안하여 도비 출연금 증액등 기금증식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출예산 부문은

- 전년도 대비 26.8% 증액된 710억 1천 4백만원으로 이는 최근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용자사업 확대 등에 의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이상 기후 등 각종 재해 발생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의 육성지원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금운용계획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5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제안자) : 200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2004. 12. 6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 : 농업기술원장 윤 재 탁

나. 제안이유

- 2005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 기금명칭 :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 (2) 설치근거 : 농업농촌기본법제18조, 농촌진흥법제2조제2항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 (3) 설치목적 :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 (4) 설치년도 : 1996년 4월 8일(제2387호)

##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1)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도운용계획			2005년 도 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농업인학습단체 육 성	1,513	65	78	△13	1,500	

(2)재원조성 : 적립금 이자수입

(3)지원기준 : 도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및 산하단체 육성,  
교육 연찬, 각종대회 등

(4)지원대상 :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경상북도생활개선회

## 4.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

###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수입·지출	78,670	1,580,252	△1,501,582	△ 95

⇒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8천만원에서 15억2백만원이 감액된 7천8백만원입니다.

##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계	78,670	1,580,252	△ 1,501,582	△ 95
전년도 이월금	13,019	1,515,484	△1,502,465	△ 99.2
적립금 이자	65,651	64,768	883	1.4

⇒ • 전년도 이월금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1천 5백만원의 0.8%인 1천 3백만원으로써 15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예산액 15억2백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지침변경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중 당해 년도에 만기가 되지 않는 예치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며,

⇒ 적립금 이자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천 4백7십만원의 1.4%인 9십만원이 증액된 6천5백 6십만원으로 이는 이자수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계	78,670	1,580,252	△1,501,582	△95
고유목적사업비	78,670	80,252	△ 1,582	△2
다음년도이월액	0	1,500,000	△1,500,000	△100

⇒ 고유목적사업비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천 2십만원의 2%인 1백 6십만원이 감액된 7천 8백 6십만원은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 개선회 육성지원 보조금이며,

⇒ 다음년도 이월액의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5억원 전액이 감액 되었으며

그 사유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지침 변경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중 당해년도에 만기가 되지 않는 예치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제외토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등 국내외의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인 단체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대 되고 있는 반면 환율하락 등 국내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농업인단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어려운 국내경기 불황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단체 스스로도 행사성 경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제193회 도의회(정례회)

제1차산업관광위원회(2004.12.3) 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4. 12. 3. 제193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관광위원회

###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함.

### 3. 운용총칙

####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계	91,183	51,705	92,729	△ 41,024	50,159
창업및경쟁력 강화사업자금	33,321	46,463	79,777	△ 33,314	7
운전자금	50,558	3,017	3,500	△ 483	50,075
유통업경쟁력 강화사업자금	7,304	2,225	9,452	△ 7,227	77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차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중소유통업자) 및  
관련조합, 단체

다. 설치목적

- 도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유통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

4.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산액(안)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 계	142,888,719	139,337,042	3,551,677	2.5	
이 자 수 입	7,656,544	9,794,331	△ 2,137,787	△ 21.8	
순세계잉여금	5,600,000	84,550,503	△ 78,950,503	△ 93.7	
기 금 전 입 금	1,500,000	9,000,000	△ 7,500,000	△ 83.3	
융자금회수수입	17,549,260	18,492,208	△ 942,948	△ 5.0	
정부 자금 채	0	17,500,000	△ 17,500,000	△ 100	
지역개발기금 수 입	25,000,000	0	25,000,000	100	
예치금 회수	85,582,915	0	85,582,915	100	

## 나. 지출 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 고
			금 액	대비(%)	
합 계	142,888,719	139,337,042	3,551,677	2.5	
중소기업육성	133,359,556	121,941,764	11,417,792	9.3	
민 간 이 전 (운전자금이자보전)	3,500,000	3,500,000	0	0	
차 입 금 이 자 (창업및경쟁력자금)	1,445,400	2,768,216	△1,322,816	△48.1	
융 자 금 (창업및경쟁력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67,000,000	51,000,000	16,000,000	31.3	
차입금원금상환 (창업및경쟁력자금)	11,331,600	13,878,800	△2,547,200	△18.3	
예 치 금	50,082,556	0	50,082,556	100	
중소유통개선	9,529,163	17,395,278	△7,866,115	45.2	
차 입 금 이 자 (이 자 상 환)	280,281	357,837	△95,556	△25.4	
융 자 금 (유통업경쟁력강화)	7,000,000	7,000,000	0	0	
차입금원금상환	2,172,200	9,726,000	△7,553,800	△77.6	
예 치 금	76,682	0	76,682	100	

##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권오성)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투자, 운전자금, 창업자금, 시장재개발, 공동창고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 ○ 2005년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 이자수입 76억 5천 6백만원은
  - 창업 및 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금이자 26억 1천 3백만원
  - 용자금회수 이자수입 50억 4천 3백만원이며
- 순세계 잉여금 56억원
- 운전자금 이자보전을 위한 도비전입금 15억원
- 민간용자금 회수수입 175억 4천 9백만원이며
-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250억원
- 만기 예치금 855억 8천 2백만원 등으로
- 기금 총 세입은 전년도 보다 3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1,42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 ○ 지출계획은

- 운전자금이자 차액 보전 35억원
- 차입금 이자 상환 14억 4천 5백만원
- 용자금 670억원(창업, 벤처기업육성, 경쟁력강화사업)
- 차입금 원금 상환 113억 3천 1백만원

- 창업 및 운전자금지원 예치금 500억 8천 2백만원 등으로
- 1,333억 5천 9백만원이 중소기업육성관리 자금이며
- 유통업경쟁력 강화 및 재해상공인 복구사업 이자 2억 8천만원
- 중소기업 유통개선 관리사업에 95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3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1,42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 금리 4.9%인 정부기채를 상환하고, 3.5%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 시중은행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가 줄어들고 있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중소기업이 원화 평가절상으로 인하여 수출 체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 대형할인점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등 재래시장,  
중소형 점포 등 소규모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상권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경쟁력 강화사업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오히려 증가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제193회 도의회(정례회)

제1차산업관광위원회(2004.12.3) 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4. 12. 3. 제193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관광위원회

###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함.

###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3,199	150	150	0	3,199

##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도출연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대학생

## 다. 지원기준

- 중·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수업료, 운영지원비)
-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 정도

## 4. 자금운용계획

###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대비(%)	
합 계	3,349,200	3,411,268	△ 62,068	△ 1.8	
이 자 수 입 (기금적립금이자)	150,346	131,202	19,144	14.5	
순세계잉여금 (기금 이월금)	9,049	0	9,049	100	
예 치 금 회 수	3,189,805	3,280,066	△ 90,261	△ 2.7	

### 나. 지출 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대비(%)	
합 계	3,349,200	3,411,268	△ 62,068	△ 1.8	
일반보상금 (장학금·학자금지원)	150,000	100,000	50,000	50	
예 치 금 (기금적립금)	3,199,200	3,311,268	△ 112,068	3.3	

##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권오성)

### ○ 자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 1천 9백만원 증가한 1억 5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9백원
- 예치금회수 31억 8천9백만원 등 수입계획 33억 4천9백만원  
이며

### ○ 지출계획은

- 고등학생 50명에게 각 1백만원
- 대 학 생 50명에게 각 2백만원 씩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 31억 9천 9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등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 ○ 이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적립금이자 범위내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의 적정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 ○ 국내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을 확대하고 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성적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자녀 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제193회 도의회(정례회)

제2차산업관광위원회(2004.12.6)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4. 12. 6. 제19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

###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함.

###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4,418	412	412	0	4,418

##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지원금, 이자수익 등
- 지원대상 : 도내 문화예술단체로서 2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자

## 4. 자금운용계획

###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대비(%)	
합 계	4,829,858	4,827,842	2,016	0.04	
이 자 수 입 (기금적립금)	172,000	180,000	△8,000	△4.4	
순세계잉여금 (전년 이월금)	53,858	43,842	10,016	22.8	
국고 보조금 (중앙기금지원 금)	240,000	240,000	0	0	
예 치 금 회 수	4,364,000	4,364,000	0	0	

## 나. 지출 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 계	4,829,858	4,827,842	2,016	0.04	
민 간 이 전 (사회단체보조금)	412,000	420,000	△8,000	△1.9	
예 치 금 (기금적립금)	4,417,858	4,407,842	10,016	0.22	

##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권오성)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05년도 기금운용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중앙기금지원금, 예치금 회수는 각각 2억 4천만원, 43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 총 수입계획은 48억 2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주요지출계획은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금은 4억 1천 2백만원으로
    - 소규모예술단체 사기진작, 관심제고 및 자긍심 고취 등에 지출하고
  - 예치금 44억 1천 7백만원은 기금운용자금 적립금입니다.
- 이를 종합하면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되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은행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적절한 기금운용을 통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과 중앙지원금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원금을 단체별로 배분함에 있어서도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제193회 도의회(정례회)

제2차산업관광위원회(2004.12.6)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4. 12. 6. 제19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

###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함.

###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감(B)	
14,020	1,059	550	509	14,529

## 나. 재원조성 및 주요사업

- 재원조성 : 자치단체출연금, 도체육회출연금, 이자수입 등
- 주요사업 : 경상북도체육회 사업 및 활동지원, 우수선수 육성

### 4. 자금운용계획

####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산액(안)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 계	15,079,478	14,620,645	458,833	3.1	
이 자 수 입 (기금적립금)	559,169	607,709	△48,540	△7.9	
순세계잉여금 (전년 이월금)	463	3,911	△3,448	△88.1	
기금 전입금	500,000	650,000	△150,000	△23.0	
예치금 회수	14,019,846	13,359,025	660,821	4.9	

#### 나. 지출 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A - B)		비고
			금액	대비(%)	
합계	15,079,478	14,620,645	458,833	3.1	
민 간 이 전 (사회단체보조금)	550,000	600,000	△50,000	△8.3	
예 치 금 (기 금 적 립 금)	14,529,478	14,020,645	508,833	3.6	

##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권오성)

### ○ 2005년 수입계획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천 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기금이월금) 4십 6만원
- 도비출연금 5억원
- 예치금 회수 140억 1천 9백만원 등

총 150억 7천 9백만원입니다.

### ○ 다음 지출계획은

-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회사업 지원에 5억 5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145억 2천 9백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 ○ 종합적으로 볼 때

- 체육진흥기금은 경상북도체육회 활동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 발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목적에 적합하도록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 특히, 금년은 우리도에서 육성한 선수가 아테네올림픽 양궁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메달 종목이 있었고,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종합 4위에 입상하는 등 2006년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전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보여지며

- 우리도의 재정력 지수는 광역자치단체중 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수 선수육성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제193회 도의회(정례회)

제2차산업관광위원회(2004.12.6) 상정,질의.토론

라. 의결일자 : 2004. 12. 6. 제193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관광위원회

###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상북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함.

### 3.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3,319	128	128	-	3,319

## 나.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

- 재원조성 :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근로청소년 장학금,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 및 연수

## 4. 자금운용계획

###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별	예산액(안)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액	대비(%)	
합 계	3,448,331	3,424,270	24,061	0.7	
이 자 수 입 (기금적립금)	128,848	130,933	△ 2,085	△ 1.5	
예치금회수	3,319,483	3,293,337	26,146	0.8	

### 나. 지출 계획

(단위:천원)

항목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A-B)		비고
			금 액	대비(%)	
합계	3,448,331	3,424,270	24,061	0.7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92,600	92,600	0	0	
민간이전 (자원봉사활성화사업)	36,000	34,000	2,000	5.8	
기타내부거래 (기금적립금)	3,319,731	3,297,670	22,061	0.6	

##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권오성)

###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 먼저 수입계획은
  - 이자수입 1억 2천 8백만원
  - 예치금 회수액 33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총 34억 4천 8백만원입니다.
- 주요지출 계획은
  -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7천 2백만원
  - 산업체 특별학교의 근로청소년 장학금 1천 6백만원
  - 청소년대상 장학금 4백 6십만원이며
  -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연수비 1천만만원
  -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 2천 6백만원이며
  - 나머지 33억 1,973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되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 청소년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투자와 더불어 미래의 동량의 키우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소관부서

가. 건설도시국 : 2005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4. 11. 11.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2004. 12. 6.

(제193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3. 운용총칙

###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기금명칭 :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
- 설치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재해위험요소의 사전 예방적 보수·정비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적립
- 설치년도 : 1996. 11. 8(1998. 12.31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 전면개정)

##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말 현재액(A+B)	비 고
		수입	지출	증감(B)		
재해대책기금	8,482	3,238	1,440	1,798	10,280	

- 재원조성 :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도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 지원기준
  - 기금조성액의 50%이내 운용
  - 지방하천 보수·보강사업 : 지방 1급 100%, 지방 2급 50%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 재난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 4. 자금운용계획

#####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계	11,720	11,720	9,682	9,682	2,038	21.0%	2,038	21.0%

##### 나. 세입·세출 예산개요

###### (1)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과목	관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355	288	67	23.2
	이자수입	355	288	67	23.2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3,025	9,394	△6,369	67.8
	순세계잉여금	142	6,710	△6,568	97.9
	전입금	2,883	2,684	199	0.07
예치금회수	소계	8,340	0	8,340	100
	예치금회수	8,340	0	8,340	100

###### (2)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과목	항세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비고
치수방재관리	사업예산	1,440	1,342	98	7.3
	예비비등	10,280	8,340	1,940	23.3

## 5. 검토의견

### □ 기금운영 규모 및 내용

- 2005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 지출 각각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96억8천2백만원보다 20억3천8백만원이(21.0%) 증액된 117억2천만원임.
- 기금운영 예산 수입, 지출 증감 내용은
  - 수입부문에서는
    -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3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1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억6천8백만이 감소된 것이며,
    - 전입금은 1억9천9백만원(0.07%) 증액된 28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은 지난해 보통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 예치금회수로 8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출부문은
    - 사업예산은 지난해 비해 7.3% 증액된 14억4천만원으로 이는 재해 사전대비 보수·보강사업 및 재난피해응급복구비이며 예치금등 예비비는 23.3%가 증액된 102억8천만원임.

## □ 종합의견

- 2005년도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은 예치금회수 등으로 21.0%가 증액된 117억2천만원이며 전체예산의 87.7%인 102억8천만원을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음.
- 재해대책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예방·재해복구 등 재해대책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 세입예산중 전입금 1억9천9백만원의 증가는 최근 지역경기 회복에 따른 것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책무임을 감안할 때 다행한 것이며
- 재해대책기금은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잘 조화를 이루어 예산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고, 도출연금은 조례에 근거한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 연구과제로써 다음에 논의되는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소관부서

가. 건설도시국 : 2005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4. 11. 11.

나. 회부일자 : 2004. 11. 12.

다. 상정일자 : 2004. 12. 6.

(제193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3. 운용총칙

###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기금명칭 :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 설치목적 :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우려시설 응급조치
- 설치년도 : 1998.12.31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말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말	비고
	현재액(A)	수입	지출	증감(B)	현재액(A+B)	
재난관리기금	3,321	819	200	619	3,940	

○ 재원조성 :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도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 ○ 지원기준

- 기금조성액의 50%이하 운용
- 용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용자한도액은 1인당(가구당) 2천만원이하

○ 지원대상 : 재난위험시설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어 입주민에 대하여 긴급대피 또는 이주 명령에 따른 용자

## 4. 자금운용계획

###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 입		지 출	
계	1,415	1,415	3,321	3,321	△1,906	57.4%	△1,906	57.4%

## 나. 수입·지출 예산개요

### (1)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고
관	항				
합 계		1,415	3,321	△1,906	57.4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소 계	98	108	△10	9.3
	이 자 수 입	98	108	△10	9.3
임시적세외 수 입	소 계	921	3,213	△2,292	71.3
	순세계잉여금	200	2,542	△2,342	92.1
	전 입 금	721	671	50	7.5
예치금회수	소 계	396	0	396	100
	예치금 회수	396	0	396	100

### (2)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고
항	세 항				
합 계		1,415	3,321	△1,906	57.4%
치수방재관리	사업예산 예비비등	200	200	-	-
		1,215	3,121	△1,906	61.1

## 5. 검토의견

### □ 기금운영 규모 및 내용

- 2005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 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 지출 각각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33억2천1백만원보다 19억6백만원이(57.4%) 감액된 14억1천5백만원임.
  
- 기금운영 예산 증감 내용은
  - 수입부문에서는
    - 경상적세의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4천2백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 전입금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증가에 따라 도비출연금인 4천9백만원이 증가된 것임.
  
  - 지출부문은
    - 사업예산은 재난위험시설보수·보강에 2억원, 그리고 기금적립금은 19억6천만원이 감소된 12억1천5백만원임.

## □ 종합의견

- 2005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57.4%가 감액된 14억1천5백만원이며, 전체예산의 85.9%인 12억1천5백만원을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음.
- 재난관리기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 재원조성은 조례에 근거하여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예산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 재난관리기금의 용자조건이 연 5%는 타기금운용이나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3%로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가구당 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나 5천만원 범위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 11. 15

나.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4. 11. 15

라. 상정일자 : 제1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16) 상정,질의,토론

마. 의결일자 :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 (2004. 12. 16)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남 성 대)

### 가. 제안이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이전 부지확보를 위한 영천시 관내 도유  
잡종재산과 영천시의 잡종재산의 교환에 관한 사항과

○ 소방본부 소관으로

- 소방헬기 구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명구조와 소방학교 강의동  
신축으로 소방공무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재산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구미시 옥계·상모·성주고령소방파출소 등이며,
- 소방파출소 신축관련 재산교환이 어려운 영주소방서 명호·문경소방서 지보·칠곡소방서 금산파출소 부지 매입 등에 관한 사항임.

## 나.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소방헬기 : 1대(프랑스산 유로콥터 14인승, 항속거리 814km, 탱크담수 900ℓ, 순항속도 269km/h)
  - 건 물 : 7동(5,090.92m<sup>2</sup>)
  - 토 지 : 7필(28,068.4m<sup>2</sup>)
- 재산의 처분
  - 교 환 : 토지 3필(53,580m<sup>2</sup>)

○ 재산의 취득·처분 내용

구분	건 명	면 적 (㎡)	추정액 (천 원)	용도 및 필요성
취득	소방헬기 구입	유로콥터	10,600,000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소방학교 전용강의동	661.16	980,000	교육생 전용강의동
	구미상모파출소	661.16	800,000	소방파출소 신축
	구미옥계파출소	661.16	800,000	"
	영주명호파출소(봉화군)	595.04	720,000	"
	문경지보파출소(예천군)	595.04	720,000	"
	성주고령파출소(고령군)	1,322.32	1,600,000	"
	칠곡금산파출소	595.04	720,000	"
	영주명호파출소부지(매입)	1,320	72,000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문경지보파출소부지(매입)	1,000	30,300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구미상모파출소부지(교환)	1,705.9	511,770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구미옥계파출소부지(교환)	1,301	611,470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칠곡금산파출소부지(매입)	737.5	135,000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성주고령파출소부지(교환)	5,622	483,879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보건환경연구원(교환)	16,382	90,920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부지
처분	구미상모·옥계파출소 신축	1,702	1,247,566	
	성주고령파출소 신축	45,963	481,964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5,915	86,359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현의)

#### □ 2005년도 경상북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근거는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것임.

####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내역은

- 취득할 재산으로서
  - 프랑스산 소방용 헬리콥터 1대(취득 추정가액 10,600백만원)와 신축되는 소방학교 전용 강의동 외 6개 소방파출소 건물(취득 추정가액 7동 6,340백만원) 및 영주명호파출소 외 5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매입 및 교환취득 추정가액 6필 1,844백만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부지(교환 추정가액 1필 91백만원)를 각각 매입, 신축, 교환을 통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 취득재산의 합계는 소방헬기 1대와 건물 7동 5,090.92m<sup>2</sup>, 토지 7필지에 28,068.4m<sup>2</sup>이며, 총 취득 추정가액은 18,875백만원임.

- 처분할 재산으로서는
  - 구미 상모·옥계소방파출소 및 성주고령파출소 신축부지(시·군유지)와 교환할 도유지(처분 추정가액 2필 1,730백만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부지(영천 시유지)와 교환할 도유지(처분 추정 가액 1필 86백만원)로서
  - 처분재산의 합계는 토지 3 필지 53,580㎡이며, 총 처분 추정가액은 1,816백만원임.

#### □ 재산 취득 및 처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 먼저 소방헬기 구입은
  - 현재 도에서는 산불진화 전용으로 러시아제 대형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가 크고 이착륙 및 운행에 따른 시간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인명구조와 각종재난에 따른 신속한 비상출동을 위해서는 다목적 중형헬기를 구입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 소방학교 전용 강의동 및 소방파출소 신축은
  - 현재 안동시 임동면 소재 경북 소방학교내에 강의전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방공무원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 소방파출소는 구미 상모 및 옥계, 영주명호, 문경지보, 성주고령, 칠곡금천 등 6개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시지역의 소방 수요가 확대되거나 소방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지역에

대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을 통해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소방파출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은
  - 영주명호 파출소와 문경 지보파출소, 칠곡 금천파출소 신축을 위해 봉화군 명호면 등 3개 지역, 3개 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영천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유 잡종재산과 영천시잡종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부지를 취득하며,
  - 구미 상모·옥계 및 성주고령파출소 신축에 따라 구미시와 고령군 소재 도유재산을 시·군유재산과 상호 교환을 통해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각종 재난과 긴급상황에 대하여 다목적 중형 헬기를 구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북소방학교 전용 강의동과 구미 상모파출소 등 지역 6개 소방 파출소 신축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의 소방수요에 원활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며,
-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과 구미 상모·옥계 및 성주 고령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신축코자 하는 지역의 시·군유지와 인근의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등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괄

1. 감사기간 : 2004.11.21 ~ 11.30(10일간)
2. 대상기관 : 66개기관(경상북도 33, 경상북도교육청33) ※ 현지확인 13개소
3.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구	건의·촉구사항
<b>합 계</b>		299	100	199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6	4	2
기 획	<b>소 계</b>	<b>32</b>	<b>16</b>	<b>16</b>
	공보관실	2	-	2
	감사관실	2	1	1
	기획관리실	6	2	4
	공무원교육원	4	2	2
	지방의료원(3)	14	10	4
	경북개발공사	4	1	3
행정사회	<b>소 계</b>	<b>25</b>	<b>9</b>	<b>16</b>
	자치행정국	9	2	7
	사회복지여성국	6	2	4
	경도대학	4	2	2
	자연환경연수원	6	3	3
교육환경	<b>소 계</b>	<b>30</b>	<b>15</b>	<b>15</b>
	보건환경산림국	8	4	4
	보건환경연구원	2	1	1
	산림환경연구소	2	2	-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1	-	1
	팔공산도립공원	1	-	1
	도교육청(10)	7	3	4
	시·군교육청(23)	9	5	4

감사위원회	부서별	계	시정처리 요구	건의·촉구사항
농수산	소 계	25	12	13
	농수산국	15	8	7
	농업기술원	10	4	6
산업관광	소 계	141	37	104
	경제통상실	24	7	17
	문화체육관광국	27	7	20
	신용보증재단	16	4	12
	중소기업지원센터	16	3	13
	한국국학진흥원	6	3	3
	생활체육협의회	8	1	7
	경북통상	19	-	19
	문화재연구원	12	2	10
	테크노파크	13	10	3
건설소방	소 계	40	7	33
	건설도시국	14	2	12
	종합건설사업소	12	3	9
	소방본부및소방서	14	2	12

## **의정활동보고서(제193회 정례회)**

2005. 1 인쇄 / 2005.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